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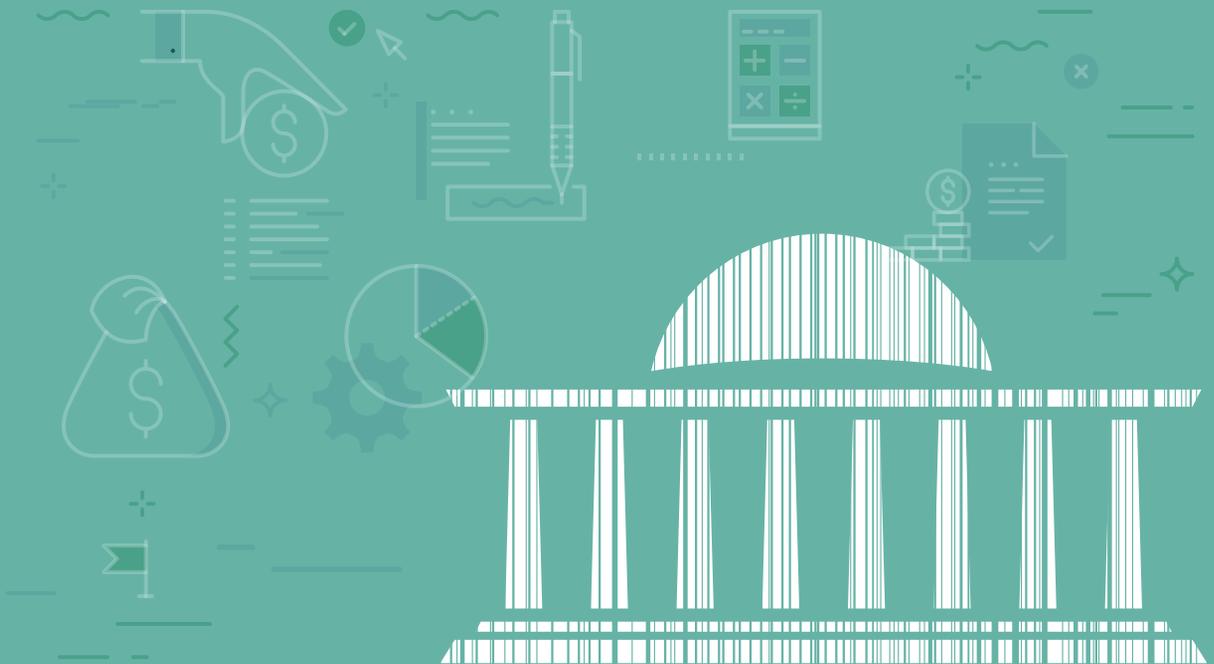


2023. 9.

국회에산정책처 | 국정감사 대비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2023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한지은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강지훈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3.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9. 1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정부 부문 총지출의 116%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이나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공급, 주거 정책 및 정책금융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2권부터 4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등 대한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가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Conten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
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출액 현황	6
3.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큰 폭의 점수 하락 및 최하위 점수 평가	9
4. 한국마사회 준마아파트 사택의 낮은 입주보증금 문제	11
5. 한국마사회가 직장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직원 인건비 대납 문제	14
6. 한국마사회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8
7.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 현황	23
8.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26
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무건전성 현황 및 주요 쟁점	32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36
11. 축산물품질평가원 징계 관련 문제점	43
12. 해양환경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45
13. 해양환경공단 성과급 관련 문제점	47
14.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피투자회사 자산 관리노력 필요	49
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성과급 관련 문제점	51
1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성과급 관련 문제점	5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58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65
3.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정 마련 필요	73
4.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80
5. 한국전력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85
6. 한국전력공사의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중 자본확충 재검토 필요	89
7.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출자회사 거래금액 적정성 검토 필요	91

8.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의 배당 제고 방안 필요	95
9. 한국전력공사, 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제고 필요	98
10. 한국전력공사, 호주 바이롱 태양광 개발사업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100
11.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용역 자회사 한전MCS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03
12. 한국전력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107
13. 한국전력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 추세	109
14. 한국전력공사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 발생	111
15. 한국전력공사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점	113
16. 한국수력원자력 성과급 관련 문제점	118
17. 한전KDN 생활안정자금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20
18. 한전KPS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125
19.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135
20.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 미수금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공시 투명성 제고 필요	139
21.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LNG 관련 해외지분투자(규제사업)를 요금기저에서 차감 필요	142
22. 한국가스공사, 케이씨엘앤지테크 및 KC화물창 소송 관련 우발부채 대비 필요	146
23. 한국가스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150
24. 한국가스공사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52
25.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요금 미회수로 인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	157
26.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161
27. 한국중부발전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 발생	163
28. 한국전력기술(주)의 사옥관리 자회사 한전기술서비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66
29. 한국전력기술(주)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170
30. 한국전력기술(주)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172
31. (주)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179
32. (주)강원랜드 출자회사 관리 현황	182

33. (주)강원랜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 하이원파트너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185
34. (주)강원랜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188
35. (주)강원랜드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90
36.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의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및 점검 필요	194
37. 대한석탄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198
38. 대한석탄공사 성과급 및 휴가휴직제도 관련 문제점	200
39.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사 금융부채에 대한 대지급 및 이행부채 1.9조원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 확대	204
40. 한국석유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209
41. 한국석유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 추세	211
42. 한국석유공사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13
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223
44.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28
45. 한국가스기술공사 성과급 관련 문제점	235
46. 한국가스안전공사 성과급 관련 문제점	238
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징계 관련 문제점	240
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징계 관련 문제점	242
49. 한국전기안전공사 징계 관련 문제점	244
50.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46
51. 기술보증기금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255
52. 기술보증기금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60
5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점	267
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273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일반현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2개 기관,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기관, 산림청 산하 3개 기관, 농촌진흥청 산하 1개 기관임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8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12개 기관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해양과학관 등 15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17개 기관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등 3개 기타공공기관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농림축산 식품부 (1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해양 수산부 (17)	준시장형 공기업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림청 (3)	기타 공공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농촌진흥청 (1)	기타 공공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 등 4개 기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2개 기관
 - 2021년 대비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축산 식품부 (6)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경영결과	D	C	E	D	B
			경영성과급	5,434	26	5,057	25	74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경영결과	D	C	B	C	B
			경영성과급	926	240	741	1,476	910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경영결과	B	B	A	A	B
			경영성과급	2,651	2,345	1,606	1,680	1,772
		한국농어촌공사	경영결과	B	B	D	C	B
			경영성과급	2,675	2,457	2,526	507	1,566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경영결과	B	C	C	B	B
			경영성과급	970	1,087	661	753	1,153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경영결과	B	C	B	C	A	
		경영성과급	1,483	1,285	834	1,122	992	
	해양 수산부 (9)	시장형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경영결과	B	C	C	C
경영성과급				0	0	0	0	0
인천항만공사		경영결과	A	B	B	C	D	
		경영성과급	0	0	0	0	0	
준시장형 공기업		해양환경공단	경영결과	C	B	B	A	A
			경영성과급	3,226	2,864	4,842	4,304	5,792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결과	B	B	B	B	B
			경영성과급	0	0	0	0	0
울산항만공사	경영결과	C	C	C	B	A		
	경영성과급	0	0	0	0	0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경평결과	B	B	D	E	C
			경영성과급	587	1,252	1,262	246	260
		한국수산업진흥원	경평결과	B	B	B	C	C
			경영성과급	0	0	0	0	0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경평결과	C	D	C	D	D
			경영성과급	823	977	258	964	236
해양수산업과학 기술진흥원	경평결과	D	C	B	A	A		
	경영성과급	794	374	1,303	1,578	2,162		
산림청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경평결과	A	A	A	B	B
			경영성과급	0	0	0	0	0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경평결과	B	B	B	D	B
			경영성과급	0	935	1,071	1,237	282
		한국수목정원 관리원	경평결과	-	-	D	B	A
			경영성과급	-	-	-	0	0
농촌진흥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경평결과	A	A	A	A	B
			경영성과급	0	0	0	0	0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하락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부산항만공사 등 2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2개 기관임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함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2개 기관
-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임
 - 2021년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이며, 2020년 대비 등급이 하락하였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축산 식품부 (7)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4	3	3	3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2	2	2	3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	2	3	2	3
		한국농어촌공사	3	3	4	4	4
	기타공공기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3	2	-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	4	3	-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4	4
해양 수산부 (11)	준시장형 공기업	해양환경공단	4	3	3	3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	2	4	4	4
	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3	-	4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4	3	-	-
		부산항만공사	5	3	3	2	1
		인천항만공사	2	3	3	2	3
		울산항만공사	3	2	2	2	2
		여수광양항만공사	3	1	2	2	4
		한국수산자원공단	3	4	5	3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	3	4	4	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	-	3		
산림청 (3)	위탁집행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3	3	3	4
	기타공공기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	-	3	4
		한국임업진흥원	-	-	-	-	3
농촌 진흥청 (1)	기타공공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2	2	3	2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가. 현황

- 한국마사회는 실제 경마가 개최되는 경마장(본장)과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
 - 한국마사회는 서울(과천), 부산, 제주 3개의 경마장(본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경마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님에도 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한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
 - 2023년 7월 말 기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는 서울 9개소, 경기 8개소 등 수도권 21개소와 지방 6개소로 총 27개소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2023년 7월 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수도권(21개소)			지방(6개소)					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대구	충청	경상	
소유	4	5	3	1	-	1	1	-	15
임차	5	3	1	-	2	-	-	1	12
합계	9	8	4	1	2	1	1	1	27

자료: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의 2022년 매출액은 6조 3,969억원이고, 입장인원은 931만 9,000명으로, 9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의 경우 매출액과 입장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한국마사회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인원,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실적	75,376	73,572	10,890	10,476	63,969
	증감률	-	△2.4	△85.2	△3.8	510.6
입장인원	실적	12,680	12,713	1,728	1,300	9,319
	증감률	-	0.3	△86.4	△24.8	617.0
당기순이익		1,828	1,449	△4,368	△3,480	973

자료: 한국마사회

나. 주요 쟁점

-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우려 존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할 것을 명시하는 등 공급규제 정책 실시
 - 2022년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4조 3,816억 1,300만원으로, 그 비중이 68.5%에 해당함. 2022년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지만, 여전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준인 50%를 상회함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매출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경마공원(A)	장외발매소(B)	총합(A+B)	장외발매소 비중 [B/(A+B)]
2018	2,229,373	5,308,255	7,537,627	70.4
2019	2,186,688	5,170,547	7,357,234	70.3
2020	317,174	771,873	1,089,047	70.9
2021	271,662	775,935	1,047,598	74.1
2022	2,015,337	4,381,613	6,396,950	68.5

자료: 한국마사회

- 장외발매소의 1인당 매출액 역시 높은 수준으로 사행성 심화에 대한 우려 존재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2022년 매출액은 4조 3,816억 1,300만원, 입장인원은 591만 9,550명으로, 1인당 매출액은 74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5년 중 2021년(84만 8,000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임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1인당 매출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천원)

연도	매출액(A)		입장인원(B)		1인당 매출액(A/B)	
	경마공원	장외발매소	경마공원	장외발매소	경마공원	장외발매소
2018	2,229,373	5,308,255	4,641,776	8,038,702	480	660
2019	2,186,688	5,170,547	4,644,505	8,068,468	471	641
2020	317,174	771,873	577,723	1,150,393	549	671
2021	271,662	775,935	384,841	914,813	706	848
2022	2,015,337	4,381,613	3,399,133	5,919,550	593	740

자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큰 폭의 점수 하락 및 최하위 점수 평가

가. 현황

- 한국마사회의 주요사업(경마사업·말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를 보면 2021년 C등급, 2022년 D등급으로 지속 하락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최근 3년간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20	2021	2022
한국마사회 (등급/점수)	-	C (83.5점)	D (68.5점)

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미 실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마사회에 대한 최근 고객만족도 점수를 보면 2021년의 경우에는 83.5점으로 C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68.5점으로 큰 폭의 점수 하락이 발생하여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101개 주요 공공기관²⁾ 중 최하위 점수에 해당하는 실적임³⁾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최근 2년간 공기업(평균) 및 한국마사회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1	2022
공기업(평균)	86.6	86.0
한국마사회	83.5	68.5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마사회의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2021년 및 2022년 연속 모든 부분에서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큰 폭의 점수 하락이 발생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책임 및 성과(국민행복 등) 부분에서 특히 큰 폭의 점수 하락이 발생

공기업(평균) 및 한국마사회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2021	88.6	85.5	85.5	80.2	84.1	81.6	86.5	83.9	85.0	74.2
2022	88.2	72.4	84.8	62.0	83.5	66.0	85.8	68.5	84.0	55.2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주요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점수	79.1점	76.7점	76.4점	69.5점	68.5점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한국마사회는 과천 소재 경영지원본부 임직원 및 부양가족 등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에 사택(준마아파트) 총 348채를 건립 후 직원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직원의 주거 복리후생을 도모하고 있음
 - 전용면적 60.65㎡ 140세대, 71.45㎡ 120세대, 84.01㎡ 88세대 등

한국마사회 준마아파트 건물 현황

(단위: ㎡)

용도	위치	건물형태	건립연도	전용면적	세대 수
직원사택	경기 안양시	아파트	1989	60.65	140
				71.45	120
				84.01	88

-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사택의 입주자는 근속기간, 부양가족, 입주신청 대기 기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되고, 3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한국마사회 준마아파트 입주 기준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기간
임직원 및 부양가족, 말관계자(조교사, 기수, 관리사, 외국인고용자) 및 부양가족	근속기간, 부양가족, 입주신청 대기 기간, 기 입주기간(재입주시)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서로 입주 순위 결정	3년 (3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15년)

나. 주요 쟁점

- 한국마사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본청 직원에 대하여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사택의 입주보증금을 주변 지역의 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고 있음
 - 전용면적 60.65㎡의 경우 1세대 당 평균 입주보증금 약 26,175천원, 71.45㎡의 경우 33,175천원, 84.01㎡의 경우 41,866천원으로, 유사 면적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260,000~620,000천원)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음

한국마사회 동별·순위별 입주보증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기존(~'22.7.21.)		현행(~'22.7.22.)		입주자 전체 평균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준마아파트 1동 (면적: 71.45㎡)	25,000	42,000	62,500	105,000	33,175
준마아파트 2동 (면적: 84.01㎡)	30,000	50,000	75,000	125,000	41,866
준마아파트 3동 (면적: 60.65㎡)	20,000	33,000	50,000	82,500	26,175

- 주: 1. 1순위는 현재 무주택자, 2순위는 12년을 초과한 1순위 입주자를 의미함
 2. 전체 평균 보증금은 '22.7.21. 이전 입주자가 포함된 것이므로, 현행 보증금보다 낮을 수 있음

한국마사회 준마아파트 전세보증금 지급 현황

(단위: ㎡, 세대, 천원)

전용 면적	세대 당 입주보증금 평균	세대 수	구성원			
			임직원	마필 관계자	기타	공실
60.65	26,175	140	29	28	76	7
71.45	33,175	120	56	47	10	7
84.01	41,866	88	46	21	4	17
합계	25,729	348	131	96	90	31

준마아파트 유사 지역 및 건립연도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현황

(단위: m², 천원)

아파트명	전용면적	건립연도	거래연월	전세 실거래가
안양대우	84.14	1991	2023.8.	360,000
은하수벽산	55.65	1992	2023.8.	260,000
	84.9	1992	2023.8.	620,000
은하수청구	55.44	1992	2023.8.	330,000
	84.87	1992	2023.8.	480,000
은하수신성	59.89	1992	2023.7.	325,000
	84.6	1992	2023.7.	460,000
셋별한양	59.82	1993	2023.7.	310,000

- 이와 같은 사택제도의 운영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제1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는 2025년까지 입주보증금을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혁신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나,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입주보증금을 주변 시세 대비 50~60%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함에도 2023년 8월 기준 준마아파트 입주보증금 수준은 여전히 유사 지역 및 건립연도의 아파트 전세가격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지방지사의 파견,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 파견 업무 대상자도 아닌 본사 지역 거주자에 대해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택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본청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특별히 사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한국마사회가 직장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직원 인건비 대납 문제

가. 현황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대외기관에 파견근무가 필요할 때에 직원의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급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한국마사회가 지급할 수 있음

한국마사회 인건비 파견 관련 내부 규정

규정	세부 내용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20조(파견)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근무가 필요할 때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외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파견자의 급여)	①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 한국마사회는 1990년부터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에 지속적으로 직원(명예직)을 1명씩 파견하고 그 직원의 인건비를 대납하였음
-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해당 파견 직원은 자산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한국마사회 목적사업의 부수적인 부분으로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2018~2023년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 파견 직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계
파견 직원 수	1	1	1	1	1	1	6
인건비	109,586	103,222	111,202	102,933	107,311	83,402	617,656

나. 주요 쟁점

-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등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기타 문화 복지 후생사업 등으로, 한국마사회 주요 사업과는 그 내용이 상이함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은 경마 및 말산업의 시행과 발전에 관한 사업, 인근지역 주민과 농어촌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과의 관련성이 낮음

「한국마사회법」 및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 정관」에 따른 한국마사회와 새마을금고의 역할 비교

규정	세부 내용
<p>「한국마사회법」 제36조(사업의 범위)</p>	<p>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판매·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10. 제1호가목·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p>「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 정관」 제48조(사업의 종류)</p>	<p>① 금고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사업 (생략)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 한국마사회가 자신의 목적사업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 자산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를 위하여 매년 1억원 가량의 파견 직원 인건비를 대납하는 것은 기관의 비효율적 예산 활용으로 보임
- 한편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인건비 및 경비집행과 관련하여 법령, 지침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가공무원법」 또한 파견근무의 범위를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마사회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91명임

한국마사회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별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173	91	7	0	12	0	34	38	4	13	1	0	1	3	6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마사회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마사회는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18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과급 9,069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는 2022년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은 미지급 중이나, 내부평가급은 여전히 D등급 지급률을 적용 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4	13	1	0	18
평가 등급	B 2명, D 1명, 기타 1명	S 2명, A 2명, B 4명, C 1명, D 2명, 기타 1명	기타 1명	-	S 2명, A 2명, B 6명, C 1명, D 3명, 기타 4명
징계연도	'20년 1명, '22년 3명	'18년 7명 '19년 4명 '21년 1명 '22년 1명	'19년 1명	-	'18년 7명 '19년 5명 '20년 1명 '21년 1명 '22년 4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33,264	57,430	0	-	90,694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한국마사회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9회의 징계위원회 중 6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마사회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3.14.	성희롱	6	2	4	33.3
2018.6.1.	성희롱	9	2	7	22.2
2018.10.13.	성희롱	9	2	7	22.2
2018.11.16.	성폭력	5	2	3	40.0
2019.9.6.	성희롱	7	1	6	14.3
2019.9.29.	성희롱	4	0	4	0.0
2019.11.29.	성희롱	8	2	6	25.0
2021.1.31.	성희롱	4	0	4	0.0
2022.10.29.	성희롱	4	2	2	50.0

-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마사회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108	42,758	14,433,109	14,475,867
2021	1,083	722,780	14,411,107	15,133,887
2022	1,100	9,674,214	13,374,739	23,048,953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마사회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이하 직원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마사회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2급 이상	경영 평가급	E	-	0	-	0	-	0	-	0	-	0	-	-
		내부 평가급	E	12	333	19	292	39	250	18	208	12	167	-	-
	3급 이하	경영+ 내부	E	12	290	19	270	39	250	18	230	12	210	-	-
2022	2급 이상	경영 평가급	D	11	17	20	15	38	13	20	10	11	8	-	-
		내부 평가급	D	11	333	20	292	38	250	20	208	11	167	-	-
	3급 이하	경영+ 내부	D	11	303	20	283	38	263	20	243	11	223	-	-
2023	2급 이상	경영 평가급	B	12	233	20	204	39	175	19	146	10	117	-	-
		내부 평가급	B	12	333	20	292	39	250	19	208	10	167	-	-
	3급 이하	경영+ 내부	B	12	465	20	445	39	425	19	405	10	385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마사회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중
 -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지원 예산과 자체 자금을 통하여 새만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분양을 진행 중
 -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2030년까지 1,850ha(9개 공구) 면적의 산업단지 부지를 총사업비 2조 6,203억원(국비 613억원, 한국농어촌공사 2조 5,590억원)을 소요하여 조성하고 있음
 - 사업기간의 경우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준공 예정 연도가 2023년(2019년 기준)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었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사업 현황

단지명	사업기간	전체 면적	총사업비	사업시행주체
새만금산업단지	2008~2030	1,850ha (9개 공구)	2조 6,203억원 (국비 613억원, 공사 2조 5,590억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기간 연장 (2023→2030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업단지는 완공된 면적 대비 분양률이 저조한 문제 존재
 - 사업시작년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완공된 면적 439ha 중 86.5ha만이 분양되었으며, 2016년까지의 누적 분양률은 19.7%에 불과
 - 2022년의 경우 분양된 면적은 73.6ha로, 전체 완공면적 810ha 대비 분양률이 9.1%에 불과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분양면적은 50ha 미만이었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분양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분양률은 매년 10% 미만임
 - 2022년의 경우 완공면적 증가(615ha → 810ha)로 분양 면적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양대상면적 대비 분양률은 9.1%로 여전히 분양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함
 -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완공 면적 810ha 중 분양된 면적은 총 301ha로, 분양률이 37.2%에 불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연도별 분양 현황

(단위: ha, 억원, %)

연도	전체 규모	완공 규모 (연도말)(A)	분양면적 (B)	분양금	분양률 (B/A)
2016년 까지	1,850	439	86.5	1,566	19.7
2017	1,850	439	0	0	0
2018	1,850	439	33.1	340	7.5
2019	1,850	439	34.2	341	7.8
2020	1,850	439	43.4	453	9.9
2021	1,850	615	30.1	361	4.9
2022	1,850	810	73.6	954	9.1
합계	1,850	810	301	4,015	37.2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분양 실적 저조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분양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자체 자금 2조 5,59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동 산업단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총 4,969억원의 공사채를 발행(2023년 8월말 기준 발행 잔액 2,859억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이자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공사채의 2022년 이자 비용 지출액은 약 51억 5,000만원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공사채 발행 이자 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2.6	15.5	26.6	26.8	30.6	36.7	47.3	50.2	51.5	36.5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6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085명, 지원금액은 296억원임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607	594	568	581	827	1,085
지원금액	14,943,760	15,400,060	14,952,760	15,495,760	23,096,960	29,566,250
1인당 지원 한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6조(기금의 용도) 및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요령」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상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직원,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직원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배우자 사망, 기타 급박한 사유로 가계에 곤란이 발생한 경우 등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년 거치 후 5년 상환 또는 5년 상환 중 택1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693	2.5	18,724,040	미개정	516	15,411,7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2명임

한국농어촌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입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351	82	12	0	19	0	19	32	15	5	11	1	3	1	48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6,513	2,747,684	76,803,012	79,550,696
2021	6,574	8,948,718	77,537,342	86,486,060
2022	6,539	15,394,982	79,409,597	94,804,579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부원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보직자	D	11	13	16	11	45	10	17	8	11	6	0	0
		부원	D	11	20	16	15	45	10	17	5	11	0	0	0
	내부 평가급	보직자	D	11	422	16	369	45	316	17	264	11	211	0	0
		부원	D	11	327	16	322	45	317	17	312	11	307	0	0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보직자	C	10	47	17	41	45	35	18	29	10	24	0.5	0
		부원	C	10	70	17	53	45	35	18	18	10	0	0.1	0
	내부 평가급	보직자	C	10	420	17	367	45	315	18	262	10	209	0.5	0
		부원	C	10	326	17	321	45	316	18	311	10	306	0.1	0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보직자	B	11	80	18	70	43	60	17	50	11	40	0.3	0
		부원	B	11	98	18	78	43	58	17	38	11	18	0.1	0
	내부 평가급	보직자	B	11	418	18	366	43	313	17	260	11	207	0.3	0
		부원	B	11	327	18	322	43	317	17	312	11	307	0.1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여섯째 등급 제외)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농어촌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
 - 동 기금은 농산물 수입이익금이나 비축농산물 판매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농산물의 가격 조절이나 수출 촉진, 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주요 재원 및 용도

주요 재원	주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부담금 (수입권 공매를 통한 농산물 수입 이익금) - 재고자산매각대(비축농산물·종자 판매수입) - 융자금회수 - 이자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 농산물의 수출 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운영 및 시설설치 등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

나. 주요 쟁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자체수입에 비해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022년 여유자금 잔액은 412억원으로 2016년(4,829억원)의 약 8.5% 수준이며, 여유자금 잔액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2022년 여유자금 증가는 특별회계전입금 2,1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797억 5,800만원 등 정부내부수입 포함한 금액으로 실질적 증가로 보기 어려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여유자금 및 정부내부수입 현황(2016~2021)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유자금 잔액	4,829	3,032	2,910	1,871	1,043	212	412
정부내부수입	0	0	0	0	0	1,800	5,89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자체수입 대비 지출규모가 컸으며, 2022년의 경우 최근 5년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자체수입은 2조 1,558억 300만원이었으나 지출 규모는 2조 7,667억 6,800만원으로, 그 차이가 6,109억 6,500만원으로 나타남.
 - 동 기금은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부터 2,1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797억 5,800만원을 전입·예탁받았고 212억 6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회수함

최근 5년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체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체수입(a)	2,082,064	2,047,969	2,088,595	1,938,522	2,155,803
지출(b)	2,385,223	2,338,959	2,274,335	2,222,826	2,766,768
차이(a-b)	△303,159	△290,990	△185,740	△284,304	△610,96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기금의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2022년의 경우 순자산은 3조 4,318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63억 9,300만원 감소하였으며,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음
- 2022년에 순자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797억 5,800만원을 예수받음에 따라 장기차입부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상태 분석(2018~2022)

(단위: 백만원)

구분	2018(c)	2019	2020	2021	2022(d)	증감(d-c)
자산합계(a)	3,970,940	3,868,951	3,700,608	3,820,414	4,056,108	85,168
부채합계(b)	42,463	28,384	15,817	222,190	624,277	581,814
순자산(a-b)	3,928,477	3,840,568	3,684,790	3,598,224	3,431,831	△496,64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프로그램 순위가 높은 편으로, 특히 2022년의 경우 프로그램 순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정부비축사업 및 종자사업의 원가와 융자사업의 비용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함
- 또한, 비배분비용이 전년 대비 30배에 해당하는 등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운영표(2018~2022)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I. 프로그램순원가	123,014	108,807	211,512	242,147	451,175
II. 관리운영비	4,404	1,766	1,792	3,498	2,113
III. 비배분비용	7,075	1,384	-	238	7,241
IV. 비배분수익	42,414	7,218	3,049	1,145	2,773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92,079	104,739	210,255	244,738	457,756
VI. 비교환수익 등	59,585	48,651	54,730	122,880	297,869
VII. 재정운영결과(V-VI)	32,494	56,088	155,525	121,858	159,88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주요 수입원의 축소 및 용자사업 등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체 수입 추가 확보 또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시행 등 대책 마련 필요
- 참고로 최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직배가격 인상을 통한 수입 증대(560억원), 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855억원),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125억원), 전통발효식품육성(120억원)의 3개 보조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타겟회계로 이관하였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용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1) 주택용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용자관리요령」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택용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용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06명, 용자금액은 221억원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용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369	387	395	382	335	306
용자금액	20,816,371	24,319,574	27,696,811	28,662,294	24,225,591	22,058,394
1인당 지원 한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용자관리요령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구입) 2년 거치, 18년 분할 상환 (임차) 임대차 계약 종료시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용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1.8	1.8	1.6	1.6	1.8	3.5	3.5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80	3.5	5,750,798	미개정	46	4,281,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융자관리요령」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94명, 지원금액은 52억원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88	227	238	226	270	294
지원금액	4,943,856	5,586,726	5,572,482	5,080,943	5,307,616	5,158,052
1인당 지원 한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융자관리요령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가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0년 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3.0	3.0	2.5	2.5	2.5	2.5	2.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23	2.5	1,994,12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19명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921	19	4	0	5	0	6	4	0	3	0	0	2	2	14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3회의 징계위원회 중 2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20.3.16.	성희롱	6	0	6	0
2020.7.6.	성희롱	6	2	4	33.3
2022.2.9.	성희롱	6	1	5	16.7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6명임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74	6	1	0	0	0	1	4	0	1	0	0	0	0	5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2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축산물품질평가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1.5.	성추행	6	3	3	50.0
2018.2.2.	성추행	4	1	3	25.0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해양환경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77%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해양환경공단은 미달성

해양환경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해양환경공단	77,572	601	0.7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해양환경공단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1.58%, 2021년 0.92%, 2022년 0.77%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 해양환경공단의 물품 등 총 구매액은 2020년 534억 7,300만원에서 2022년 775억 7,200만원으로 45% 증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020년 8억 4,600만원에서 2022년 6억 100만원으로 오히려 29%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해양환경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53,473	846	1.58
2021	70,584	650	0.92
2022	77,572	601	0.7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해양환경공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해양환경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해양환경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707	3,112,349	10,113,944	13,226,293
2021	739	4,292,796	10,655,083	14,947,879
2022	767	5,003,880	10,898,094	15,901,974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해양환경공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비간부직 내부평가급 등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해양환경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그 외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성과급		B	67	176	104	150	330	131	102	113	55	87	4	0
	내부 평가급	간부직		4	670	9	570	19	500	5	430	4	330	0	0
		비간부직		57	520	83	510	275	500	83	490	47	480	4	0
2022	경영평가성과급		A	66	235	102	200	362	175	100	151	62	116	9	0
	내부 평가급	간부직		3	670	6	570	18	500	5	430	3	330	0	0
		비간부직		58	520	87	510	288	500	82	490	53	480	8	0
2023	경영평가성과급		A	74	268	114	228	342	200	112	172	71	132	17	0
	내부 평가급	간부직		4	670	8	570	12	500	8	430	4	330	0	0
		비간부직		64	520	96	510	261	500	94	490	61	480	15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해양환경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피투자회사 자산 관리노력 필요

가. 현황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2년에 2021년 대비 6조 1,738억원 감소한 △1조 9,86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피투자회사인 HMM의 주가 하락에 기인하고 있음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임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2년에 △1조 9,86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2021년 당기순이익(4조 1,874억원) 대비 6조 1,738억원 감소한 것임
 - 이와 같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2021년 대비 2022년 손익 악화는 주로 금융상품 평가손익 6조 7,409억원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음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 손익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수익(A)	307	2,055	35,645	54,501	3,240	△51,261
- 금융상품평가·처분이익	0	611	33,368	51,319	14	△51,305
영업비용(B)	△1,740	△3,255	△1,526	△4,919	△21,408	△16,489
- 금융상품평가·처분손실	△1,343	△1,618	△39	△3,670	△19,774	△16,104
영업이익(손실)(B-A)	△1,433	△1,200	34,119	49,582	△18,167	△67,750
당기순이익(손실)	△1,955	△1,674	26,045	41,874	△19,863	△61,738

주: 각 연도 발생한 비용 및 손실은 △로 표시하였고, 손익의 증감은 (-)로 표시함
 자료: 공공기관 연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투자 비중이 높은 피투자회사의 실적 및 주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상품 및 지분법주식의 가치하락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상품 평가손실은 대부분 HMM¹⁾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것임
 - 2022년 말 기준 HMM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²⁾ 5조 2,335억원을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하, FVPL³⁾)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HMM 관련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분율	장부가액				
		2018	2019	2020	2021	202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4,155	11,278	48,209	72,023	52,335

자료: 공공기관 연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관련 FVPL의 공정가치는 HMM 주가에 연동하며 2021년 5조 1,312억원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였으나, 2022년에는 1조 9,688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
- 동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 및 처분손익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영업손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HMM 주가 하락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2022년 영업손익은 2021년 대비 7조원 감소하였음

1) HMM는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에 의한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회사임

2) HMM이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데, HMM이 만기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채권자는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 없음

3) FVPL는 Fair-Value through Profit or Loss의 약자임

가. 현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586	159,969	1,569,135	1,561,067
2021	618	163,555	1,492,226	1,610,882
2022	669	1,015,421	889,808	2,505,867

주: 2023년에 지급되는 3급 이하 내부평가급은 12월 일괄 지급 예정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내부평가급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으며, 3급 이하 내부평가급의 경우 사실상 4개 등급만으로 운영되었음

최근 3년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D	10	133	20	117	40	100	15	83	15	67	-	0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	10	140	21	120	38	100	20	80	11	60	-	-
		3급 이하	-	10	163	41	125	38	75	11	25	-	-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E	10	133	18	117	39	100	14	83	19	67	-	0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	12	140	21	120	38	100	18	80	11	60	-	-
		3급 이하	-	10	163	41	125	37	75	13	25	-	-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C	10	133	19	117	36	100	11	83	23	67	1	0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	11	140	21	120	39	100	19	80	10	60	-	-
		3급 이하	-	10	163	41	125	32	75	17	25	-	-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간부직 직원의 경우 개인의 총 연봉 중 20% 이상의 임금을 반납 후 운용하기 때문에, 0%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은 개별직원의 생존권 및 의식주 생활의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가. 현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534	602,010	5,228,783	5,830,793
2021	534	137,616	5,292,022	5,429,638
2022	528	802,083	5,280,055	6,082,138

주: 2022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내부평가급(2023년 지급)은 추후 금액 변경 가능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비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으며, 내부 평가급은 4개의 등급만 존재하였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비보직자 내부평가급 등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성과급		B	8	135	12	110	44	100	10	90	26	65	-	0
	내부	보직자		17	120	69	100	14	80	-	60	-	-	-	-
	평가급	비보직자		16	110	61	100	23	90	-	80	-	-	-	-
2022	경영평가성과급		D	9	135	12	110	47	100	13	90	19	65	0.2	0
	내부	보직자		21	120	60	100	19	80	-	60	-	-	-	-
	평가급	비보직자		16	110	62	100	22	90	0.2	80	-	-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보직자	B	12	135	14	110	46	100	16	90	11	65	1	0
		비보직자		10	135	12	110	42	100	11	90	25	65	-	0
	내부 평가급	보직자		16	120	68	100	15	80	1	60	-	-	-	-
		비보직자		18	110	59	100	23	90	-	80	-	-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단, 일부 등급 제외)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일반현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특허청 산하 6개 기관임
-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1개,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준시장형 공기업 6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한국전력거래소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타공공기관 13개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창업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8개 기관
-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등 기타공공기관 6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산업통상 자원부 (41)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중소벤처 기업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 공공기관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6)	기타 공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11개, 준시장형 공기업 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개 기관과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 특허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 등 14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주)강원랜드, 한국남부발전(주) 등 9개 기관임
 -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1년 우수(A) 등급에서 2022년 보통(C) 등급으로 하락, 한국동서발전(주)는 2021년 탁월(S) 등급에서 양호(B) 등급으로 하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1년, 2022년 평가 모두 미흡(D) 등급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은 없으며,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양호(B) 등급에서 보통(C)등급으로 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통상 자원부 (30)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경영결과	B	B	B	C	D
			경영성과급	7,725	7,875	7,945	6,786	5,597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영결과	B	A	A	B	B
			경영성과급	7,476	8,157	10,719	9,716	7,439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결과	C	B	B	A	C
			경영성과급	5,747	3,988	5,736	5,188	6,483
		(주)강원랜드	경영결과	C	C	C	C	D
			경영성과급	0	3,906	4,160	3,089	3,759
		한국가스공사	경영결과	B	C	D	C	C
			경영성과급	3,734	5,225	3,307	0	4,408
		한국남동발전(주)	경영결과	B	A	A	A	B
			경영성과급	7,376	8,011	10,543	8,451	9,173
		한국남부발전(주)	경영결과	A	B	B	A	C
			경영성과급	6,803	8,754	8,010	6,994	8,426
		한국동서발전(주)	경영결과	B	B	A	S	B
			경영성과급	9,337	8,011	7,805	9,061	10,510
		한국서부발전(주)	경영결과	C	B	B	C	A
			경영성과급	4,061	5,828	8,255	7,847	6,387
		한국중부발전(주)	경영결과	A	C	C	A	C
			경영성과급	7,140	9,913	4,532	5,967	8,934
한국석유공사	경영결과	C	C	D	C	B		
	경영성과급	1,573	7,240	6,643	0	7,055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결과	C	B	B	C	B	
		경영성과급	3,255	2,501	4,109	3,437	3,076	
	대한석탄공사	경영결과	E	D	C	D	C	
		경영성과급	0	23	878	1,881	971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결과	-	-	C	B	C	
		경영성과급	-	-	-	3,220	6,535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경영결과	D	C	B	B	B	
		경영성과급	5,573	3,246	5,647	7,376	8,703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전KDN	경평결과	B	B	B	B	C
			경영성과급	5,837	7,480	7,261	6,698	6,796
		한전KPS	경평결과	D	B	B	B	B
			경영성과급	2,365	607	6,754	7,430	6,32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평결과	A	B	B	B	A	
		경영성과급	1,841	2,716	2,389	2,537	2,62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경평결과	A	A	A	B	A	
		경영성과급	3,426	3,265	3,141	3,225	2,329	
	한국가스안전공사	경평결과	C	C	D	C	B	
		경영성과급	1,178	914	1,075	550	1,1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평결과	A	C	B	C	C	
		경영성과급	1,753	1,869	1,235	1,616	1,303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경평결과	B	A	B	C	A	
		경영성과급	2,397	2,158	2,610	2,154	1,41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평결과	C	D	C	C	A	
		경영성과급	1,075	822	431	977	1,111	
	한국석유관리원	경평결과	B	C	C	D	B	
		경영성과급	789	1,151	787	897	335	
	한국에너지공단	경평결과	A	A	A	B	C	
		경영성과급	1,836	2,616	1,711	1,886	1,54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평결과	D	C	B	B	B	
		경영성과급	298	578	1,071	1,313	1,444	
	한국전기안전공사	경평결과	C	B	C	C	B	
		경영성과급	445	648	985	795	796	
	한국전력거래소	경평결과	C	D	D	C	B	
		경영성과급	1,251	960	644	495	1,400	
한국디자인진흥원	경평결과	C	C	C	B	A		
	경영성과급	779	933	1,020	999	1,557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경평결과	B	C	C	D	D		
	경영성과급	1,111	1,707	1,388	1,359	451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소기업 벤처부 (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경평결과	A	B	B	B	C
			경영성과급	2,747	2,962	2,396	2,348	2,317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경평결과	B	A	A	B	B
			경영성과급	1,127	1,694	2,329	2,088	1,94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경평결과	D	C	B	B	C
			경영성과급	257	252	584	896	824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경평결과	B	B	B	B	C
			경영성과급	0	0	0	0	0
		창업진흥원	경평결과	-	D	B	C	C
			경영성과급	-	-	0	0	0
특허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특허개발전략원	경평결과	C	C	B	C	C
			경영성과급	0	0	0	0	0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1개, 준시장형 공기업 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10개, 기타공공기관 5개 기관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9개 기관임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음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 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임
 - 2022년 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2020년과 동일한 등급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통상 자원부 (34)	시장형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	3	2	3	3	3
		한국서부발전(주)	4	3	2	3	4
		한국석유공사	3	3	3	3	4
		한국지역난방공사	4	4	5	3	2
		한국가스공사	3	3	3	3	4
		(주)강원랜드	5	4	3	4	4
		한국남동발전(주)	2	2	2	2	1
		한국남부발전(주)	3	2	3	2	2
		한국중부발전(주)	2	1	-	2	2
		한국수력원자력(주)	1	2	1	2	2
		한국전력공사	4	3	3	2	2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KPS(주)	3	2	2	3	2
		대한석탄공사	3	5	1	4	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5	3	3	4	3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	3	3	2	2
		한전KDN	2	3	3	2	3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2	1	-	2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3	3	4	3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3	4	3	2
		한국전기안전공사	2	3	3	3	3
		한국산업단지공단	4	3	4	4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2	3	2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2	2	2	2
		한국석유관리원	3	2	4	2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2	3	2	3
		한국전력거래소	4	2	2	2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3	3	2	3
	기타공공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3	4	3	-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3	2	-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3	3	3	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3	3	3	2	2
		한국세라믹기술원	2	3	2	-	-
		한전MCS(주)	-	-	-	-	2
중소기업 벤처부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3	5	3	3
		기술보증기금	2	2	2	1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4	4	3	4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3
		창업진흥원	-	-	-	-	4
		중소기업유통센터	2	2	4	5	4
한국벤처투자		3	4	3	-	-	
특허청 (1)	기타공공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3	3	2	-	2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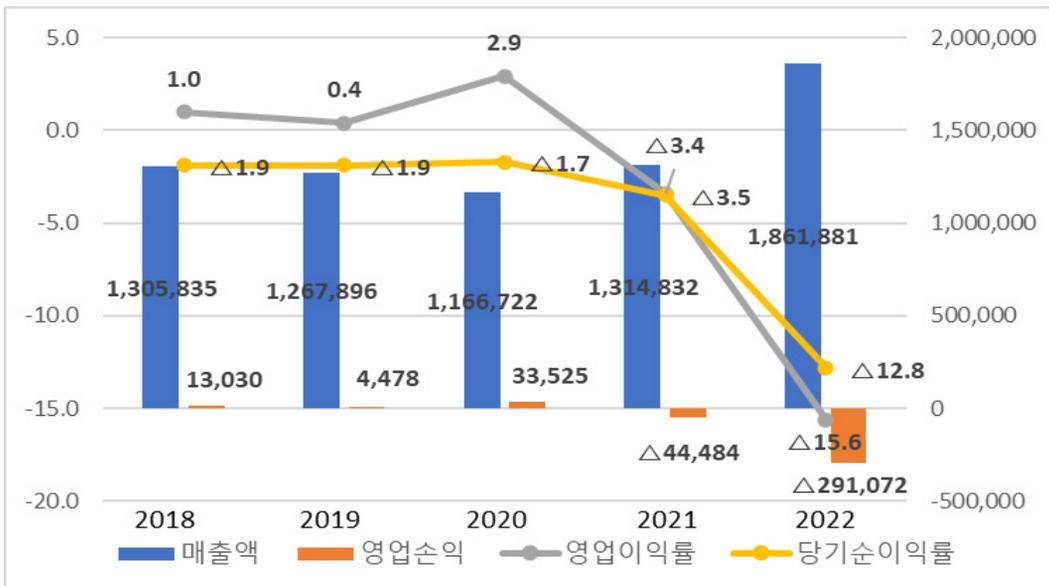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은 2023년 기준 17개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11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6개 기관임
 -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임
 -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2022년 매출액은 186조 1,881억원, 영업손익은 △29조 1,072억원, 당기순손익은 △23조 8,812억원, 영업이익률은 △15.6%, 당기순이익률은 △12.8%로 나타남
 -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매출액이 54조 7,048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익이 24조 6,587억원, 당기순이익이 19조 2,824억원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률은 12.2%p 감소, 당기순이익률은 9.3%p 감소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수익성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매출액	1,305,835	1,267,896	1,166,722	1,314,832	1,861,881	547,048
영업손익	13,030	4,478	33,525	△44,484	△291,072	△246,587
당기순손익	△24,706	△24,276	△19,401	△45,988	△238,812	△192,824
영업이익률	1.0	0.4	2.9	△3.4	△15.6	△12.2
당기순이익률	△1.9	△1.9	△1.7	△3.5	△12.8	△9.3



주: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에 (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설립 되었으며, 2021년 9월 이전 자료는 두 기관의 합계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수익성이 전년 대비 악화되었으며, 이는 석탄 및 LNG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크게 확대됨에 기인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2022년 부채 총계는 283조 308억원이며, 사채 및 차입금은 189조 9,527억원, 부채비율은 318.9%, 차입금의존도¹⁾는 5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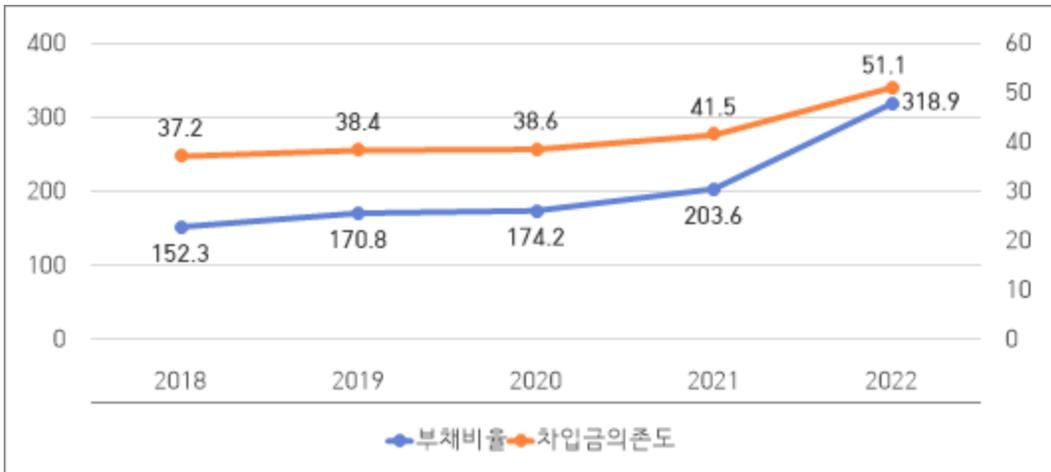
1) 금융비용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자산의 전체 자산에 대한 비중임

-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부채 총계는 68조 9,318억원, 사채 및 차입금은 57조 3,634억원, 부채비율은 115.3%p, 차입금의존도는 9.6%p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부채	1,744,447	1,901,220	1,913,662	2,140,990	2,830,308	689,318
사채 및 차입금	1,073,790	1,158,849	1,163,769	1,325,893	1,899,527	573,634
부채비율	152.3	170.8	174.2	203.6	318.9	115.3
차입금의존도	37.2	38.4	38.6	41.5	51.1	9.6



- 주: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부채비율은 (부채÷자본)×100, 차입금의존도는 (사채 및 차입금÷총자산)×100으로 산출함
 3.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에 (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2021년 9월 이전 자료는 두 기관의 합계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외부차입 증가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318.9%로 나타남

- 부채 규모는 2018~2022년간 108조 5,86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채 및 차입금이 82조 5,737억원(76.0%)이 증가하여 2018년 이후 부채의 증가는 대부분 외부차입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나. 주요 쟁점

나-1) 수익성

- 2022년 매출액은 한국전력공사(별도) 68조 9,515억원, 한국가스공사(별도) 50조 3,018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0조 6,077억원 순이며, 이들 세 기관의 매출액 합계는 129조 8,610억원으로 전체의 69.7% 규모임
- 2022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임²⁾
 - 한국전력공사는 석탄 및 LNG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³⁾ 상승으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구입비가 급등하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재료(천연가스) 상승으로 매출원가가 상승했으나, 이를 열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여 영업손실 4,039억원이 발생함
 -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설비 유지보수관리공사 및 용역 계약 변동⁴⁾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무연탄 판매단가 제약⁵⁾으로 매출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매출원가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2)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가스요금 동결)되면 LNG 가격(원료비)의 상승분을 가스요금에 반영할 수 없음에 따라 가스를 원가 대비 낮은 단가(요금)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에 반영하여 향후 보전' 가능하다는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향후 받을 수 있는 자산(원료비미수금)'으로 인식하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원료비미수금 고려 시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세부적인 사항은 본 보고서의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참고).

3) 시간대별 전력수요에 맞게 발전변동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발전기가 투입되면서 시간대별로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발전기의 변동비가 해당 시간대의 시장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한다. 도매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은 원자력, 석탄 발전기(민간 발전기 포함)의 경우 계통한계가격에 전원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변동비 + 발전차익 = 변동비 + (계통한계가격 - 변동비) × 정산조정계수)하여 정산하며, 그 외 발전기에 대해서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정산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2022, p.11)

4) 기존에는 설비 설계에 따라 유지보수점검실적을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했으나, 2022년 실제 유지보수점검 발생분만 금액을 지급하기로 변경되어,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매출액이 감소하였음

5) 「석탄및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됨

■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매출액이 54조 7,048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이 24조 6,587억원, 당기순이익이 19조 2,824억원 감소함

- 전기판매단가 상승, 천연가스 판매단가 상승, SMP 상승에 따른 발전사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영업이익 26.5조 감소, 당기순이익 19.7조 감소)에서 기인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한국전력공사 (별도)	매출액	602,715	589,332	579,894	596,606	689,515	92,909
	영업이익	△21,933	△28,483	27,851	△74,256	△339,086	△264,830
	당기순이익	△10,952	△25,950	19,515	△56,077	△252,977	△196,900
	영업이익률	△3.6	△4.8	4.8	△12.4	△49.2	△36.8
	당기순이익률	△1.8	△4.4	3.4	△9.4	△36.7	△27.3
한국가스공사 (별도)	매출액	249,856	239,038	200,042	261,568	503,018	241,450
	영업이익	11,087	11,858	9,506	10,018	20,158	10,140
	당기순이익	3,053	816	△936	5,945	8,529	2,584
	영업이익률	4.4	5.0	4.8	3.8	4.0	0.2
한국수력 원자력(주)	매출액	89,552	89,826	99,997	94,903	106,077	11,174
	영업이익	11,456	7,831	13,158	8,122	6,451	△1,671
	당기순이익	△1,020	2,465	6,179	2,945	△620	△3,565
	영업이익률	12.8	8.7	13.2	8.6	6.1	△2.5
한국지역 난방공사	매출액	24,873	23,679	20,989	25,368	41,730	16,362
	영업이익	145	422	1,328	397	△4,039	△4,436
	당기순이익	△2,265	△256	279	215	△1,840	△2,055
	영업이익률	0.6	1.8	6.3	1.6	△9.7	△11.3
(주)한국가스 기술공사	매출액	2,433	2,499	2,722	3,015	3,267	252
	영업이익	49	138	13	△38	△72	△34
	당기순이익	48	53	11	26	△66	△92
	영업이익률	2.0	5.5	0.5	△1.3	△2.2	△0.9
대한석탄공사	매출액	1,240	585	401	520	730	210
	영업이익	△652	△844	△932	△1,040	△916	124
	당기순이익	△823	△1,221	△1,099	△1,325	△1,673	△348
	영업이익률	△52.6	△144.3	△232.4	△200.0	△125.5	74.5
	당기순이익률	△66.4	△208.7	△274.1	△254.8	△229.2	25.6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한국광해 광업공단	매출액	8,427	7,703	6,779	13,714	11,146	△2,568
	영업이익	△5,244	△5,622	△13,671	2,161	△876	△3,037
	당기순이익	△7,163	△5,081	△14,643	2,764	△181	△2,945
	영업이익률	△62.2	△73.0	△201.7	15.8	△7.9	△23.7
	당기순이익률	△85.0	△66.0	△216.0	20.2	△1.6	△21.8

주: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에 (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2021년 9월 이전 자료는 두 기관의 합계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2) 재무건전성

-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별도), 한국가스공사(별도), 한국수력원자력(주)순이며,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한 부채 규모 68조 9,318억원 중 세 기관에서 62조 5,476억원(90.7%)가 증가함
 -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이 부족하여 차입금 및 사채 조달로 구입전력비 및 설비투자비용, 기타 영업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LNG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비가 상승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증가하였으나, 매출 관련 현금유입 증가(판매단가 상승)로 이어지지 않아 외부차입이 증가함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전 준공에 따른 복구충당부채⁶⁾ 증가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함
- 2022년 부채비율은 한국가스공사 642.9%, 한국전력공사 493.9%이며,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남
 - 부채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 대비 348.2%p가 증가하였음
- 2022년 차입금의존도는 대한석탄공사 243.0%, 한국광해광업공단 136.3%, 한국석유공사 83.0% 순으로 나타남
 - 세 기관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총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음

6) 복구충당부채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최선의 지출추정치로, 원전 준공 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됨

부채, 사채 및 차입금,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한국전력공사 (별도)	부채	534,046	583,508	597,721	685,319	1,089,630	404,311
	사채및차입금	267,760	312,997	310,975	391,492	768,478	376,986
	부채비율	98.7	113.4	112.1	145.7	493.9	348.2
	차입금의존도	24.9	28.5	27.5	33.9	58.7	24.8
한국가스공사 (별도)	부채	306,908	305,553	275,887	336,060	512,921	176,861
	사채및차입금	241,435	247,041	224,472	264,476	430,562	166,086
	부채비율	433.4	455.8	420.6	452.6	642.9	190.3
	차입금의존도	63.9	66.3	65.7	64.5	72.6	8.1
한국수력 원자력(주)	부채	306,531	340,768	360,784	388,271	432,575	44,304
	사채및차입금	96,774	104,556	111,866	122,239	124,949	2,710
	부채비율	120.8	132.8	137.7	147.5	164.6	17.1
	차입금의존도	17.3	17.5	18.0	18.8	18.0	△0.8
한국석유공사	부채	174,749	181,310	186,449	199,630	197,951	△1,679
	사채및차입금	135,609	138,384	142,777	148,780	151,954	3,174
	부채비율	2,287.0	3,415.8	△1,634.2	△1,286.0	△1,323.2	△37.2
	차입금의존도	74.4	74.2	81.6	80.8	83.0	2.2
한국지역 난방공사	부채	40,978	43,632	42,694	46,942	58,111	11,169
	사채및차입금	27,388	30,273	28,593	30,051	35,802	5,751
	부채비율	262.6	285.3	236.7	257.5	348.6	91.1
	차입금의존도	48.4	51.4	47.1	46.1	47.9	1.8
(주)한국가스 기술공사	부채	699	1,166	1,242	1,418	1,374	△44
	사채및차입금	0	0	0	0	178	178
	부채비율	61.1	98.0	103.1	106.9	101.2	△5.7
	차입금의존도	0	0	0	0	6.5	6.5
대한석탄공사	부채	18,207	19,813	21,010	22,628	23,917	1,289
	사채및차입금	17,451	19,024	20,319	21,870	23,470	1,600
	부채비율	△179.4	△178.4	△176.6	△175.1	△167.7	7.4
	차입금의존도	216.6	218.6	222.9	225.3	243.0	17.7
한국광해 광업공단	부채	62,956	68,017	71,066	72,642	74,494	1,852
	사채및차입금	57,288	62,099	65,997	69,447	70,800	1,353
	부채비율	△872.5	△574.2	△277.7	△327.5	△330.4	△2.9
	차입금의존도	102.8	110.6	145.1	137.6	136.3	△1.3

주: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에 (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설립 되었으며, 2021년 9월 이전 자료는 두 기관의 합계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2022년 이자보상배율(%)은 △5.6배이고, 전년 대비 음(-)의 이자보상배율이 확대되었음

- 이는 현 이자비용의 6.6배만큼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하여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 발생에 기인함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배)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한국전력공사 (별도)	이자비용	9,020	9,517	8,964	8,518	16,021	7,503
	이자보상배율	△2.4	△3.0	3.1	△8.7	△21.2	△12.5
한국가스공사 (별도)	이자비용	8,767	8,718	7,545	6,908	10,243	3,335
	이자보상배율	1.3	1.4	1.3	1.5	2.0	0.5
한국수력 원자력(주)	이자비용	8,424	8,663	8,566	8,275	9,256	981
	이자보상배율	1.4	0.9	1.5	1.0	0.7	△0.3
한국지역 난방공사	이자비용	628	652	619	581	738	157
	이자보상배율	0.2	0.6	2.1	0.7	△5.5	△6.2
대한석탄공사	이자비용	359	380	323	300	537	237
	이자보상배율	△1.8	△2.2	△2.9	△3.5	△1.7	1.8
한국광해 광업공단	이자비용	1,692	1,902	2,000	1,952	2,138	186
	이자보상배율	△3.1	△3.0	△6.8	1.1	△0.4	△1.5
전체	이자비용	39,854	42,379	40,260	37,975	51,612	13,637
	이자보상배율	0.3	0.1	0.8	△1.2	△5.6	△4.4

주: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과 차입원가 자본화된 이자비용의 합계임
 3.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산출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산출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 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정 마련 필요

가. 현황

- 2023년 기준 32개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3개는 사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규제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설립근거법 및 정관 등에서 사채발행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6개이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6개, 환경부 산하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1개임

공기업별 사채발행한도 규정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관련 법률	사채발행 한도
산업통상 자원부 (6)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 22.12.31 개정사항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6배의 범위에서 발행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정관 제43조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 22.12.31. 4배 → 5배로 개정됨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한국광해 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1조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한국지역 난방공사	정관 제56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 * 21.3. 2배 → 4배로 개정됨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배

구분	기관명	관련 법률	사채발행 한도
국토 교통부 (6)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15조, 정관 제46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4조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 정관 제16, 17조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법」 제15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
환경부 (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3조, 정관 제31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30

- 32개 공기업 중 19개 공기업은 일반사채 발행과 관련¹⁾한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 규정이 없음
 - 사채발행한도규정이 없는 공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11개로 가장 많으며, 주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그룹사로 구성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3개이며, 주식회사 에스알의 경우 면허기준 상 리스를 제외한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채 한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1)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립근거법 및 정관 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한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사채 관련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는 공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기획재정부(1)	한국조폐공사
방송통신위원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화체육관광부(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림축산식품부(1)	한국마사회
해양수산부(1)	해양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11)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국토교통부(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33

나. 주요 쟁점

-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는 공기업 19개 중 2022년 말 기준 사채를 발행한 기관은 총 9개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7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2개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 및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주식회사 에스알임

사채발행한도규정이 없는 공기업의 사채발행 현황

(단위: 개)

구분	부처	기관명
사채발행 (9)	산업통상자원부(7)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국토교통부(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사채 미발행 (10)	기획재정부(1)	한국조폐공사
	방송통신위원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화체육관광부(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림축산식품부(1)	한국마사회
	해양수산부(1)	해양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국토교통부(1)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9개 기관의 사채잔액은 (주)에스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은 2018년에 비해 2022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2022년의 사채 증가 규모는 7조 8,778억원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사채잔액은 38조 7,048.1억원이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사채발행 잔액은 1,999억원임
 -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잔액이 38조 7,048억원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하고 있음
 -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잔액은 2022년 말 기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12.2조원, 한국중부발전(주)이 8조원, 한국서부발전(주)이 5.8조원, 한국남부발전(주)이 5.0조원, 한국남동발전(주)이 4.1조원, 한국동서발전(주)이 3.7조원임

사채발행한도규정이 없는 공기업의 연도별 사채잔액

(단위: 개, 억원)

부처	구분	2018(A)	2019	2020	2021	2022(B)	증감(B-A)
산업 통상 자원부 (7)	한국수력원자력(주)	94,937	100,794	105,319	109,972	121,679	26,742
	한국중부발전(주)	54,774	67,980	73,621	78,789	80,326	25,552
	한국서부발전(주)	50,582	49,325	52,191	53,218	57,641	7,059
	한국남부발전(주)	44,297	44,996	46,400	50,306	49,779	5,482
	한국남동발전(주)	32,353	30,562	31,843	38,728	40,839	8,486
	한국동서발전(주)	31,427	32,459	33,486	36,267	36,784	5,357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0.1	0.1	0.1	0.1	0.1	0
	소계	308,370.1	326,116.1	342,860.1	367,280.1	387,048.1	78,678
국토 교통부 (2)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0	0	0	998	999	999
	(주)에스알	1,899	1,899	1,899	1,000	1,000	△899
	소계	1,899	1,899	1,899	1,998	1,999	100
합계		310,269.1	328,015.1	344,759.1	369,278.1	389,047.1	78,778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6개 발전자회사는 사채잔액 규모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채 발행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6개 발전자회사 부채비율(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A)	2019	2020	2021	2022(B)	증감(B-A)
한국수력원자력(주)	120.8	132.8	137.7	147.5	164.6	43.8
한국중부발전(주)	192.1	241.2	253.4	247.2	198.6	6.5
한국서부발전(주)	151.5	171.2	175.3	192.0	152.3	0.8
한국남부발전(주)	131.6	159.8	157.3	173.4	147.6	16.0
한국남동발전(주)	102.9	126.6	135.2	147.7	126.0	23.1
한국동서발전(주)	90.3	107.1	107.3	107.6	90.4	0.1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말 기준 6개 발전자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금 대비 사채발행배수를 추정한 결과 3개 기관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중부발전(주)는 사채발행배수가 3.0배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주)이 2.4배, 한국남부발전(주)가 2.0배로 자본금 및 적립금 대비 사채를 2배 이상 발행하고 있음
- 사채발행한도가 있는 13개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²⁾,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2배를 한도로 규정함을 고려해 볼 때, 발전자회사 중 3개 기관은 상기 기관의 사채발행한도 규정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22년 말 6개 발전자회사 자본금 및 적립금 대비 사채발행배수 추정액

(단위: 억원, 배)

구분	자본금 (a)	각종 적립금 (b)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차감손금) (c)	기타자본 구성요소 (d)	자본금 및 적립금 (e=a+b+c+d)	2022년 말 사채잔액 (f)	사채발행 배수 (f/e)
한국수력원자력(주)	12,122	110,990	44,859	△5	167,966	121,679	0.7
한국중부발전(주)	1,429	19,533	8,859	△2,997	26,824	80,326	3.0
한국서부발전(주)	1,666	17,421	5,816	△418	24,485	57,641	2.4
한국남부발전(주)	2,387	16,516	6,189	△9	25,083	49,779	2.0
한국남동발전(주)	2,976	25,649	8,577	△1,847	35,355	40,839	1.2
한국동서발전(주)	2,897	15,156	10,101	△822	27,332	36,784	1.3

- 주: 1.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기준은 한국전력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함
 2. 기타자본구성요소(d)는 기타자본만 포함함
 3. 당해연도 사채발행배수는 전년도 자본금 및 적립금으로 결정되므로, 자본금 및 적립금은 2021년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연도별 연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임

-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채발행한도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사채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전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채발행한도규정 마련이 필요함
 -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잔액은 2018년 30.8조, 2022년 38.7조로 2018~2020년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을 상회하고 있고 2021년에는 유사한 수준임
 - 2022년에는 석탄, LNG 등 원자재 가격 증가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사채잔액이 전년 대비 29조 3,109억원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6개 발전자회사의 2022년 말 기준 사채발행 잔액 38조 7,048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 잔액인 66조 451억원의 58.6%임
 -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³⁾에 의해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6개 발전자회사는 정관에 사채발행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⁴⁾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사채잔액(2018~2022)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6개 발전자회사 사채잔액(A)	308,370	326,116	342,860	367,280	387,048
한국전력공사 사채잔액(B)	257,643	301,191	299,204	367,342	660,451
한전 대비 발전자회사 사채잔액비율(A/B)	119.7	108.3	114.6	100.0	58.6

- 주: 1.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당해연도 사채발행배수는 전년도 자본금 및 적립금으로 결정되므로, 자본금 및 적립금은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2. 12. 31.>
- 4) 이에 대해 발전자회사들은 에너지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점, 정부가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 관리제도 도입 등 다방면으로 부채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채발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사채발행한도 규정 마련이 필요함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자산은 131조 237억원, 부채는 108조 9,630억원, 자본은 22조 607억원으로 나타남
 - 부채는 2021년 68조 5,319억원 대비 40조 4,31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석탄, LNG 등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외부차입으로 사채 및 차입금이 37조 6,986억원 증가함에 기인함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매출액은 68조 9,515억원으로 2021년 59조 6,606억원 대비 9조 2,909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익은 26조 4,830억원, 당기순손익은 19조 6,900억원 감소함
 - 2022년 매출액의 증가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 전력판매량 상승, 전기요금조정으로 판매단가가 증가하여 증가함
 - LNG 및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하여 전력구입비가 급등함에 따라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이 큰 폭으로 감소함

한국전력공사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자산	1,074,864	1,098,093	1,131,035	1,155,785	1,310,237	154,452
부채	534,046	583,508	597,721	685,319	1,089,630	404,311
자본	540,818	514,585	533,314	470,466	220,607	△249,859
매출	602,715	589,332	579,894	596,606	689,515	92,909
영업손익	△21,933	△28,483	27,851	△74,256	△339,086	△264,830
당기순손익	△10,952	△25,950	19,515	△56,077	△252,977	△196,90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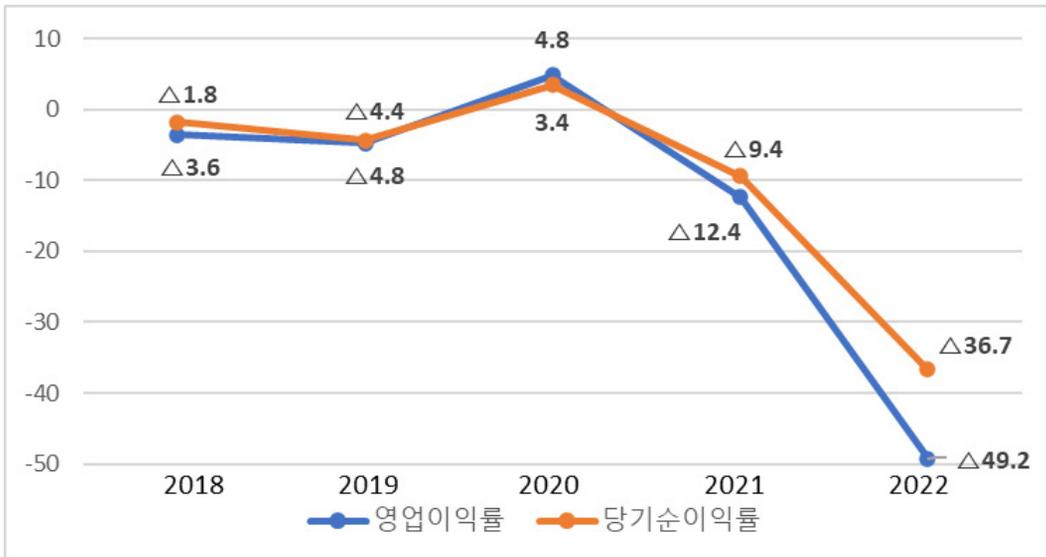
나-1) 수익성

-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을 제외하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상 최대로 수익성이 악화됨
 - 2022년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Delta 49.2\%$, 당기순이익률 $\Delta 36.7\%$ 로 나타남
 - 2022년 영업손실은 33조 9,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4,830억원 확대됐으며, 당기순손실은 25조 2,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6,900억원 확대됨
-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은 석탄 및 LNG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전력구입비가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이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것임

한국전력공사 주요 수익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이익률	$\Delta 3.6$	$\Delta 4.8$	4.8	$\Delta 12.4$	$\Delta 49.2$	$\Delta 36.8$
당기순이익률	$\Delta 1.8$	$\Delta 4.4$	3.4	$\Delta 9.4$	$\Delta 36.7$	$\Delta 27.3$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나-2) 재무건전성

- 2021~2022년 동안 당기순손실의 큰 폭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각 2021년 1조 2,726억원, 2022년 29조 4,420억원 음(-)의 현금흐름을 보임

한국전력공사 현금흐름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22,756	16,683	72,427	△12,726	△294,420	△281,694
투자활동 현금흐름	△61,829	△56,900	△73,658	△57,800	△80,993	△23,193
재무활동 현금흐름	32,257	43,842	△1,844	69,706	375,461	305,755

자료: 한국전력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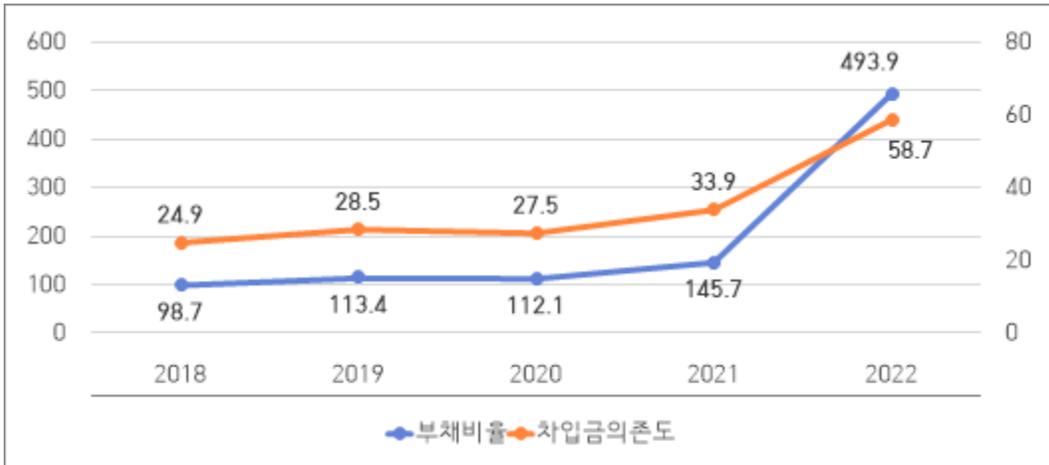
- 이에 따라 2022년 차입 및 사채발행 증가로 전년 대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부채비율은 493.9%로 전년 대비 348.2%p 증가하였고, 차입금과 사채의 합계 금액은 76조 8,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 6,986억원 증가함
 - 총자산 중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는 58.7%¹⁾이며,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33.9%에서 2022년 58.7%로 24.8%p 증가함
 - 금융부채의 급증은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에서 29조 4,420억원, 투자활동에서 8조 993억원에서 발생한 음(-)의 현금흐름을 대부분 차입금과 사채(재무활동)로 조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1)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법인기업(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28.2%임

한국전력공사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부채비율	98.7	113.4	112.1	145.7	493.9	348.2
차입금의존도	24.9	28.5	27.5	33.9	58.7	24.8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바탕한 사채를 중심으로 금융부채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이 증가함

-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022년 말 기준 108조 9,630억원이며, 이 중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금융부채는 76조 8,478억원(70.5%)이고 금융부채 중 사채는 66조 451억원으로 85.9%를 차지함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현황(2022년 말)

(단위: 억원, %)

금융부채					총부채(D)
차입금(A)	사채(B)	금융부채 (C=A+B)	금융부채 중 사채 비중(B/C)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중(C/D)	
108,027	660,451	768,478	85.9	70.5	1,089,63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별도)는 2022년 말 기준 부채비율 493.9%, 차입금의존도 58.7%, 이자 보상배율 $\Delta 21.2$ 배²⁾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용등급은 Aa2(3)으로 국가신용등급과 같으며, 이는 독자신용등급³⁾ Baa2(9)보다 6단계 높음

한국전력공사 국제 신용평가사(Moody's) 신용등급

(단위: 단계)

구분	2020			2021			2022		
국가신용등급	Aa2(3)			Aa2(3)			Aa2(3)		
구분	독자 신용등급	최종 신용등급	차이	독자 신용등급	최종 신용등급	차이	독자 신용등급	최종 신용등급	차이
독자 및 최종 신용등급	Baa2(9)	Aa2(3)	6	Baa2(9)	Aa2(3)	6	Baa2(9)	Aa2(3)	6

-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Aaa를 1단계로 한 신용등급 단계(notch)로, 낮을수록 신용도가 높음을 뜻함
 2. 상기 등급은 각 연도별 최종 신용평가 등급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p.52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과 차입원가 자본화를 합한 이자비용으로 산출함
- 3)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신용등급 단계는 아래와 같음

	투자등급										투기등급										
단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등급명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Ba2	Ba3	B1	B2	B3	Ca1	Ca2	Ca3	Ca	C

자료: <https://www.moody.com/>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개년 동안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부채비율 전년대비 348.2%p 증가, 차입금과 사채 전년대비 37조 6,986억원 증가, 차입금 의존도 전년 대비 24.8%p 증가함

한국전력공사 5개년 손익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매출액	602,715	589,332	579,894	596,606	689,515	92,909
영업손익	△21,933	△28,483	27,851	△74,256	△339,086	△264,830
당기순손익	△10,952	△25,950	19,515	△56,077	△252,977	△196,900
부채비율	98.7	113.4	112.1	145.7	493.9	348.2
차입금의존도	24.9	28.5	27.5	33.9	58.7	24.8

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각 연도별 한국전력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에서 24조 9,420억원, 투자활동에서 8조 993억원에서 발생한 음(-)의 현금흐름 대부분을 차입금과 사채로 조달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 현금흐름(2022년)

(단위: 억원)

구분	금액
영업활동 현금흐름	△249,420
투자활동 현금흐름	△80,993
재무활동 현금흐름	375,461

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각 연도별 한국전력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당기순손실 발생하였으며, 이는 석탄 및 LNG 등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 상승과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중 증가 등에 기인
 - 매출원가 중 구입전력비가 92조 7,031억원으로 2021년 대비 35조 8,250억원 상승하여 영업손실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SMP 상승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에 의함

2021년 대비 2022년 손익 증감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증감액
수익(매출액)	596,606	689,515	92,909
- 전기판매수익	580,009	672,968	92,959
매출원가	651,489	1,008,833	357,344
- 구입전력비	568,781	927,031	358,250
매출총이익(손실)	△54,883	△319,318	△264,435
영업이익(손실)	△74,256	△339,086	△264,830

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계통한계가격(SMP)(2018~2022)

(단위: 원/kWh)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통합SMP	95.16	90.74	68.87	94.34	196.65	102.31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22년도 전력시장통계」

- 석탄(97.8원→156.7원/kWh)과 LNG(121.9원→239.9원/kWh)의 전력구입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력구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구입금액 상승은 구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임

연도별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2018~2022)

(단위: 원/kWh)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석탄	82.1	86.3	81.6	97.8	156.7	58.9
LNG/복합	122.5	119.6	99.3	121.9	239.9	118.0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력수요 충족 시 전력구입단가가 높은 민간발전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중 지속적 증가로 전력구입비가 높아져 한국전력공사의 손실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전력구입량은 571,797GWh로 2021년 대비 17,272GWh(3.1%) 상승하였으며, 증가한 전력구입량은 6개 발전회사에서 8,092GWh를 구입하고 민간발전사에서 9,181GWh 구입하여,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한 전력수요를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량을 높여 충족시킴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량(2018~2022)

(단위: GWh,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발전자회사 소계	397,072 (72.4)	387,906 (71.8)	373,627 (70.5)	379,658 (68.5)	387,750 (67.8)	8,092 (△0.7)
민간발전사	151,021 (27.6)	152,614 (28.2)	155,981 (29.5)	174,866 (31.5)	184,047 (32.2)	9,181 (0.7)
합계	548,093 (100.0)	540,520 (100.0)	529,608 (100.0)	554,525 (100.0)	571,797 (100.0)	17,272

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량은 PPA* 구입량이 포함되므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전력거래량보다 높음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방식

자료: 한국전력공사

- 2018~2022년간 발전자회사의 평균 전력구입단가보다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단가가 높았으며, 2022년 단가 차이도 확대(20.0원/kWh→85.0원/kWh)되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단가(2018~2022)

(단위: 원/kWh)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발전자회사 평균	87.5	88.2	83.2	95.3	134.1	38.8
민간발전사	114.9	112.0	90.6	115.3	219.1	103.8
합계	95.2	95.3	85.9	102.6	162.1	59.5

주: 발전자회사 평균은 발전자회사 전체 구입금액을 구입량으로 나눈 단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중 자본확충 재검토 필요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8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14.3조원 규모의 5개년 (22~26) 재정건전화계획을 발표했으며, 동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 수익확대, 자본확충으로 이루어져 있음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내용

(단위: 조원, %)

구분	내용	규모	비율
자산매각	한전기술 경영권 확보 외 잔여지분 14.77% 매각 설립목적을 달성한 한국전기차충전, 인텔렉추얼 지분 매각 필리핀 세부 및 SPC 합자사업 매각 변전소 잔여부지, 구사옥 등 부동산 매각	1.5	10.5
사업조정	건설사업 공정관리를 통한 공사착공 지연 고객이 일부만 부담하는 지중화사업 20% 축소 등	2.5	17.5
경영효율	석탄발전상한제(4~11월) 시행 한시적 유보 업무추진비 포함 경상경비 30% 절감 등	2.3	16.0
수익확대	단가 인상요인 반영 및 공급기준 개선 등 영업제도 개선 자동이체고객 요금 할인액 축소 및 IT청구고객 요금할인 폐지 등 배전공가설비 요금 6.5% 인상	1.0	7.0
자본확충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 시행	7.0	49.0
합계		14.3	100

주: 방안별 비율은 각 재정건전화 계획 방안 규모 ÷ 전체 규모로 산출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자본확충은 토지 외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자산증가 시 익년도부터 비용 (감가상각비) 증가 우려가 있어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며, 자산 재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이연법인세) 고려 시 자본 증가 영향은 5.1조원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중 자본확충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1(실적)	2022	2023	2024	2025	2026
기초 자본총계(A)	533,314	470,466	269,285	282,184	344,868	359,589
유상증자(신주발행)	-	-	-	-	-	-
출자전환	-	-	-	-	-	-
유형자산 재평가	-	-	-	51,045	-	-
이익잉여금 증가	△62,848	△201,181	12,899	11,639	14,721	14,856
자본확충 소계(B)	△62,848	△201,181	12,899	62,684	14,721	14,856
기말 자본총계(A+B)	470,466	269,285	282,184	344,868	359,589	374,445

주: 자산재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이연법인세) 고려 시 자본 증가 영향은 5.1조원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나. 주요 쟁점

- 유형자산 재평가는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고 장부상 자본(기타포괄손익)만 증가시켜 실질적인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상 자금 유입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¹⁾에 따르면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발생 시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고, 당기손익에 영향 없이 장부상 토지와 재평가잉여금이 증가하며, 재평가 후 매각 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음
 - 따라서 토지재평가 시에는 장부상 토지와 재평가잉여금이 증가하고 실질적인 현금 유입과 이익잉여금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매각계획이 없는 토지재평가 금액은 자금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국전력공사는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상 자본확충으로 인한 7조원(세금 고려시 5.1조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출자회사 거래금액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그룹사는 6개 발전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 한전KDN은 지분율 100%임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회사는 전력그룹사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3사(한전MCS, 한전FMS, 한전CSC)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책에 따라 2019년 설립
 - 한전MCS는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업무 수행, 한전FMS는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업무, 한전CSC는 전기이용자의 상담서비스 제공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

(단위: %)

회사명	한전 지분율	설립연도	설립 목적
한전MCS	100.00	2019.3.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업무 수행
한전FMS	100.00	2019.3.	한국전력공사 시설의 청소, 시설관리 및 경비 업무 등
한전CSC	100.00	2019.12.	한국전력공사 전기 이용자의 상담서비스 제공

자료: 각 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와의 거래로 인한 비중이 크며, 해당 거래로 인해 지속적인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을 시현하고 있음
 - 자본금은 7개 출자회사 모두 최근 5년(2018~2022)간 일정하며, 한전CSC를 제외한 6개 회사가 일정한 자본금을 기반으로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증가 하였음

출자회사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한국전력 기술(63.6)	당기순이익	129	264	202	165	180	940
	이익잉여금	4,511	4,597	4,834	5,165	5,465	-
한전KPS (82.9)	당기순이익	1,608	1,577	859	981	979	6,004
	이익잉여금	9,703	10,536	10,407	11,005	12,021	-
한전원자력 연료(97.5)	당기순이익	158	246	145	258	315	1,122
	이익잉여금	2,898	3,087	3,151	3,385	3,661	-
한전KDN (95.2)	당기순이익	600	422	452	672	426	2,572
	이익잉여금	3,243	3,616	3,903	4,493	4,851	-
한전MCS (100.0)	당기순이익	-	34	192	190	85	501
	이익잉여금	-	34	215	402	611	-
한전FMS (100.0)	당기순이익	-	2	8	2	22	34
	이익잉여금	-	2	13	11	47	-
한전CSC (100.0)	당기순이익	-	-	25	△21	△21	△17
	이익잉여금	-	-	25	5	9	-

주: 괄호 안은 최근 5개년(2018-2022)간 출자회사의 매출액 중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매출액 비중임
 자료: 각 회사 제출자료 및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출자회사와의 거래 시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되어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출자회사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영업손익을 구성, 영업손익 중 규제서비스¹⁾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사업에 소요 되는 총괄원가에 포함됨
 -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규제서비스 포함분만큼 총괄 원가가 상승하여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상기 분석한 것과 같이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출자회사와의 계약금액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수준 이상의 계약금액 지급 후 이익을 배당금으로 회수하는 것보다 최초 지급하는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총괄원가가 하락하여 전기 사용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출자회사와의 거래방식은 한전이 출자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용역비용을 지급 하고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 시 배당받는 구조임
 -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에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비용 중 규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액 총괄원가를 상승시켜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나, 출자회사 배당금은 총괄원가를 하락시키는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요금 하락 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음

1)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② 서비스의 분리단위는 고유의 수입원 존재여부, 관련 수입 또는 비용의 분리가능성, 서비스의 지속 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 즉,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발전사업), 제5호(송전사업) 및 제7호(배전사업)의 규정 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규제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비규제서비스는 규제서비스 이외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사업 등이 해당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 관련 총괄원가 구성 구조

항목	규제서비스 (전기요금 반영)	비규제서비스 (전기요금 미반영)	전기요금 영향
총괄원가(1+2)			
1. 적정원가(①+②+③+④)			
① 영업비용			
㉠ 구입전력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출자회사 지급비용 - 지급수수료 - 수선유지비 등		총괄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효과
㉢ 인건비 및 기타비용			
② 영업외비용			
③ 법인세비용			
④ 영업외수익		출자회사 수령배당금 - 배당금수익	총괄원가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기요금 인하효과 없음
2. 적정투자보수(①×②)			
① 요금기저			
② 적정투자보수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말 현재 44개의 출자회사¹⁾를 보유하고 있음
 - 그 중 지분을 100%인 자회사는 6개 발전자회사 및 한전KDN, 한전MCS, 한전FMS, 한전 CSC, KEPCO Philippines Corporation 등 14개임
 - 2022년에 전력그룹사 중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7개로 전체 배당액 2,012억 6,600만원 중 한국전력공사가 수령한 배당액은 1,682억 6,700만원으로 나타남

전력그룹사 중 한전 배당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순이익(A)	지분율	배당금(전체)	배당금 (한전 수령)(B)
한국남동발전	71,662	100.00	35,833	35,833
한국서부발전	106,361	100.00	53,193	53,193
한국동서발전	2,888	100.00	1,448	1,448
한국전력기술	17,954	65.77	10,766	7,114
한전KPS	97,881	51.00	58,725	29,952
한전원자력연료	31,508	96.36	15,752	15,178
한전KDN	42,584	100.00	25,549	25,549
합계	370,838	-	201,266	168,267

주: 2022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 1) 국내 출자회사는 전기요금 미납채권으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회사,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회사와 신탁, 펀드회사, 한국전력거래소는 제외했으며, 해외 출자회사는 청산 중인 회사(KEPCO Ilijan Corporation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출자회사에 포함), 건설 중인 회사, 지주회사를 제외하였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당기순손실 25조원 발생 등 경영위기 개선을 위해 해외유보배당금을 조속히 수령할 필요가 있음
 - 지분율 50% 초과 회사 중 KEPCO Ilijan Corporation(이하 KEILCO)과 Qatrana Electric Power Company는 전체 배당액이 각각 159억 7,000만원, 34억 4,4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 동 배당액은 전액 한국전력공사가 100% 소유한 지주회사(SPC2)에 배당되었으며, KEILCO는 청산 절차로 인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후 지주회사에 유보시킨 배당금을 한전으로 배당 예정이고, Qatrana Electric Power Company는 지주회사 관리비 등 최소잔액 유지 후 한전 배당 예정인 상황임

2022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한전에 미배당한 출자회사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순이익	지분율	배당금(전체)	배당금 (한전 수령)
KEPCO Ilijan Corporation (KEILCO)	16,455	51.00	15,970	0
Qatrana Electric Power Company	22,577	80.00	3,444	0

주: 2022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율이 100%이며, 한국전력공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대부분 100%임에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하지 않고 있음
 - 한전MCS는 한국전력공사에 2020년과 2021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50억 8,100만원을 배당함
 - 한전FMS는 2022년 당기순이익이 21억 7,600만원 발생했고 누적 이익잉여금이 46억 8,500만원이나 한국전력공사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³⁾

2) KEPCO International Philippines, Inc., KEPCO Middle East Holding Company

3) 한국전력공사는 한전FMS의 2022년 부채비율이 225%로 기획재정부 기준의 재무위험기관에 해당되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 손익 및 배당 현황

(단위: 백만원, 배,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한전MCS (100%)	당기순이익	3,408	19,190	19,042	8,468
	이익잉여금	3,408	21,490	40,188	61,126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3.4	21.5	40.2	61.1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비중	100	100	100	99.9
	배당액	-	-	-	5,081
한전FMS (100%)	당기순이익	198	837	214	2,176
	이익잉여금	198	1,305	1,111	4,685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0.4	2.6	2.2	9.4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비중	100	100	100	100
	배당액	-	-	-	-
한전CSC (100%)	당기순이익	-	2,479	△2,101	△2,134
	이익잉여금	-	2,466	494	932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	3.1	0.6	1.1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비중	-	100	100	100
	배당액	-	-	-	-

주: 1. 정규직화 자회사는 2019년에 설립됐으며, 한전CSC는 설립일이 12월 5일이므로 2019년 손익자료를 표시하지 않음

2: 구분의 괄호 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율임

자료: 각 기관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당을 유보하였다는 입장이나, 한전FMS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아 차입금의존도는 0임

한국전력공사, 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제고 필요

가. 현황

- 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¹⁾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부사업인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의 내역사업임
 - 「전기사업법」 제49조²⁾에 근거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 성숙도 및 공급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년도 사업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400억원 중 민간자본보조 지원비율 60%에 해당하는 240억원을 2022년에 전액 교부함

2022년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28,378	28,378	-	-	28,378	28,378	-	-	3,940
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24,000	24,000	-	-	24,000	24,000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1)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3-308

2)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의 동 사업 집행액은 7억 3,400만원(3.1%)에 불과하여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였으므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 집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내 암모니아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국내 최초이므로 설계, 인허가, 건설, 기자재, 시공 등의 사례가 부족하며, 기본·상세설계, 안전기준 수립 및 규격서 작성을 위한 적정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선행 사례가 부족하여 사업이 단년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점, 암모니아 혼소특성으로 인해 저장 인프라 외 인수설비 등의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한 데는 무리가 있음
 - 사업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 변경하였으나, 2023년에 입찰공고, EPC계약체결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기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수행될 예정이므로 2023년에도 계획 대비 실제 기간이 장기 소요될 여지가 남아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여 관련 절차가 계획된 기간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교부된 예산의 집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암모니아 발전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A)							
24,000	24,000	24,000	24,000	-	24,000	734	3.1	23,2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호주 바이롱 태양광 개발사업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부터 바이롱(Bylong) 석탄광산사업을 통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이하 NSW)주의 바이롱벨리에 있는 노천과 지하탄광을 개발해 발전용 유연탄을 발굴·채취하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사로부터 당시 한화 기준 약 4,604억원을 투자하여 바이롱석탄광산을 인수하였고¹⁾, 인수 이후 탐사, 토지매입 등에 추가적으로 총 2,77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 투자 총액은 총 8,425억원임

Bylong석탄광산 사업비 집행내역(2022년 말)

(단위: 억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인수비	4,604	-	-	-	-	-	-	-	-	-	-	-	-	4,604
탐사/인허가	-	116	209	265	232	162	179	161	152	113	20	-	2	1,611
토지매입비	-	232	153	63	596	-	42	75	1	-	-	-	-	1,162
금융비용	-	52	38	41	36	23	35	97	96	149	142	137	-	846
법인운영비	-	12	19	27	28	25	22	6	18	18	10	11	6	202
합계	4,604	411	419	396	892	210	278	339	267	280	172	148	8	8,425

자료: 한국전력공사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2022, p.29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 1) 이 시기, 글로벌 메이저 자원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은 개발광산의 투자비 조달과 제철용 광산 위주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호주 NSW주 소재 5개 광산을 입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 추진하였고, NSW주 주요 탄전지대인 시드니 분지에 소재한 바이롱 광산은 풍부한 매장량과 고품질의 유연탄 및 양호한 인프라를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하게 되었음

- 동 사업은 2012년부터 주 정부의 신규 인허가 절차 추진 지연 및 현지 환경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석탄광산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유로 승인 불허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됨
 - 2015년 한국전력공사가 호주 NSW주에 신청한 계획개발허가평가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독립평가위원회(IPC: 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²⁾로, 2019년 9월 IPC는 최종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반려결정을 통보함
 - 2021년 3월 한국전력공사는 항소심을 제기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1년 9월 호주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함

나. 주요 쟁점

- 2021년 이후 석탄광산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며, 바이롱광산의 개발허가 반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5,057억원으로 나타남
 - 바이롱광산의 개발허가 반려에 따라 2019년 4,652억원의 자산손상 및 기타 대손상각비 40억원 등 총 5,0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22년 말 바이롱석탄광산개발사업에 대한 손상 및 당기순손익

(단위: 억원)

구분		바이롱자산손상	기타대손상각비	소계(a)
Bylong 석탄광산사업	2019	4,652	40	4,692
	2020	-	201	201
	2021	45	119	164
	2022	-	-	-
	합 계	4,697	360	5,057

주: 바이롱자산손상은 바이롱 관련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처리 금액을 의미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2022, p.31

2)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New South Wales주 독립평가위원회를 의미함

-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수소 등의 대안사업을 검토하는 등 바이롱사업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태양광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기존 석탄사업이 주 독립평가위원회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중단된 상황이므로, 태양광 개발 사업(대안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NSW주의 ‘중요한 개발(State Significant Development, SSD)’로 분류되므로 NSW주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가 필요하며, 호주 연방 정부의 승인 또한 필요할 수 있음³⁾
 - 따라서 기존 석탄광산사업이 주 독립평가위원회의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중단되었으므로, 전력망 연결 등 물리적인 사항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요인 또한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DNV에서 수행한 태양광 개발 사업 1차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임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용역 자회사 한전MCS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3개의 자회사 중 한전 MCS에 10억원을 출자함
 - 한국전력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검침용역(한전MCS), 청소, 시설관리, 경비용역(한전FMS), 한전의 전화상담서비스용역(한전CSC) 등의 수행을 위하여 2019년에 설립된 3개의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100% 지분을 취득함
 - 한전MCS는 전기 검침용역 업무를 전담하며, 설립 시 자본금은 9.5억원이며, 2022년 말 기준 인원은 일반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을 합하여 총 4,248명이며, 2022년 매출액은 3,636억원임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사업 범위	설립일	자본금	인원	매출액
한전MCS	검침 용역	2019-03-25	950	4,248	363,627
한전FMS	청소, 시설관리, 경비	2019-03-25	500	2,070	105,339
한전CSC	서비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9-12-05	800	988	46,558

주: 인원과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며, 인원은 일반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인원의 합계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전MCS는 2019년 3월에 설립된 후 2022년 말까지 자본금의 64배 수준인 이익잉여금(611억원)을 내부 유보 중이며, 여유자금은 357억원으로 추정됨
 -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1)에 근거하여 출자회사인 한전MCS(주)와 전기검침과 송달업무와 관련하여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함
 - 한전MCS(주)는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이며, 2019년 3월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그 결과, 이익잉여금은 2022년 말에 611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9.5억원의 64.3배에 해당하며, 여유자금 추정액은 2019년 27.5억원에서 급증하여 357억원에 이룸
 - 참고로 한전MCS(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73개 자회사 중에서 이익잉여금과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비중이 가장 높음

한전MCS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본금	이익잉여금	여유자금 추정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9	950	3,408	2,751	129,393	3,962	3,408
2020	950	21,490	11,867	342,053	23,860	19,190
2021	950	40,188	31,327	349,116	23,707	19,043
2022	950	61,126	35,745	363,627	10,377	8,468

주: 여유자금 추정액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 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및 수금 관련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한전 MCS(주)와 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인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현원보다 많음. 최근 차이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9~2022년 동안 평균적인 차이비율은 8.2%임
 - 계약 인원이 실제 전기 검침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보다 많아 발생하는 차이 인원분에 대한 인건비 등은 자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내부 유보되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게 되지만, 모회사에서는 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한전MCS에 지불하는 용역비는 전기요금으로 이어지는 비용(적정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짐
- ※ 참고로 한전MCS는 2022년에 50.8억원의 배당을 실시함

한전MCS 계약 인원 대비 현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약 인원	현원	차이	차이비율
2019	5,092	4,870	222	4.6
2020	4,832	4,397	435	9.9
2021	4,686	4,199	487	11.6
2022	4,470	4,166	304	7.3

주: 계약 인원과 현원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인원은 일반관리비율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현원과 계약 인원의 차이를 계산하지 않음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렇게 자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한국전력공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매출원가 확대로 최근 5년 중 2020년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시현 중이며, 2022년에는 25.3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더불어 부채비율도 493.9%로 전년 대비 급증하여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한국전력공사 부채, 부채비율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부채	53,404,611	58,350,681	59,772,045	68,531,927	108,963,058
당기순이익	△1,095,213	△2,594,957	1,951,498	△5,607,732	△25,297,712
부채비율	98.7	113.4	112.1	145.7	493.9

자료: 한국전력공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적절한 수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요금으로 이어지는 총괄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용역계약의 주요 단계별(용역원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자회사 내부의 여유자금을 배당을 통하여 환수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력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97%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미달성

한국전력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전력공사	1,551,441	15,055	0.9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97%, 2021년 0.62%, 2020년 0.75%로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1,776,008	13,350	0.75
2021	2,686,195	16,661	0.62
2022	1,551,441	15,055	0.9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력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 추세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의 주요사업(주택전기공급·비주택전기공급·기타전기공급)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를 보면 2020년 C등급, 2021년 C등급, 2022년 D등급으로 지속 하락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20	2021	2022
한국전력공사 (등급/점수)	C (83.8점)	C (82.8점)	D (79.1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점수는 83.8점(20년), 82.8점(21년), 79.1점(22년)으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매년 공기업 전체 평균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점수는 79.1점으로, 101개 주요 공공기관²⁾ 중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되었음³⁾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0	2021	2022
공기업(평균)	87.3	86.6	86.0
한국전력공사	83.8	82.8	79.1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전력공사의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3년 내내 모든 부분에서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점수 또한 지속적인 하락추세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전반적 고객만족 및 성과(국민행복 등)부분에 대한 점수가 특히 더 저조한 상황
 - ‘고객센터 연결 지연’, ‘직원의 불친절’ 등에 대한 불만은 연례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임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한국전력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전력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전력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전력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전력 공사
	2020	89.4	87.0	86.0	80.3	85.1	81.7	87.1	83.4	85.8
2021	88.6	85.8	85.5	80.0	84.1	80.6	86.5	82.3	85.0	81.8
2022	88.2	83.1	84.8	75.2	83.5	76.6	85.8	78.2	84.0	77.0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주요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점수	79.1점	76.7점	76.4점	69.5점	68.5점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 발생 시 그 현황을 공시¹⁾하여야 함
-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15건의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간 누적
한국전력공사	3	1	3	7	1	15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환경법규 위반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납부한 과태료는 총 1,690만원임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등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벌금	과태료	과징금
2018	2,000	-	2,000	-
2019	2,000	-	2,000	-
2020	450	-	450	-
2021	10,450	-	10,450	-
2022	2,000	-	2,000	-
합계	16,900	-	16,900	-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 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환경법규 위반은 총 15건

-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15건으로, 전체 시장형 공기업 중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103건)의 14.6% 차지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간 누적
한국전력공사(a)	3	1	3	7	1	15
전체 시장형 공기업(b)	28	27	11	28	9	103
비중(a/b)	10.7	3.7	27.3	25	11.1	14.6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관리 철저 필요

- 한국전력공사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미이행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관리 철저 필요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전력공사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

연도	위반내용	위반법령	건수
2018	건설폐기물 변경계획 미이행 등	「건설폐기물법」	2건
	시스템 폐기물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1건
2019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법」	1건
2020	시스템 폐기물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등	「건설폐기물법」	3건
2021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건설폐기물법」	5건
	폐기물 보관용기 표지판 미설치 등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2건
20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건설폐기물법」	1건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주택용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는 내부 규정인 「연봉 및 복리후생 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용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용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30명, 용자금액은 285억원임

한국전력공사 주택용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428	539	620	576	570	330
용자금액	33,187,000	41,648,000	50,897,000	50,798,000	49,665,000	28,548,000
1인당 지원 한도	취득: 100,000 / 임차: 80,000					70,000
관련 내부 규정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6조(복리후생 구분) 5. 주택자금 대여금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4년 거치 일시상환, 5/10/15/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용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공사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취득: 3.0 / 임차: 2.5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대여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전력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금리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한도
900	취득: 3.0 임차: 2.5	78,213,000	개정	2.5~3.0	816	74,088,000	개정	80,000~100,00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전력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 (2022년 이후)에 대해서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공사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025명, 지원금액은 189억원임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859	1,346	1,316	2,017	2,029	1,025
지원금액	49,990,000	38,200,000	38,080,000	39,610,000	39,380,000	18,910,000
1인당 지원 한도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제 3조(대부기준)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근속 1년이상 재직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5년 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1.75	1.75	1.75	1.75	1.75	2.2	3.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대여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이전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금리
3,054	1.75~3.5	58,270,000	개정	1.75~3.5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전력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2022년 이후)에 대해서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 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 미확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3,396	121,103,615	113,997,748	235,101,364
2021	13,510	92,615,125	117,288,218	209,903,344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1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21~2022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4직급 이하에서는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음

2021~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3직급 이상	16	280	19	245	26	210	27	175	12	140	-	-
		4직급 이하	18	250	16	230	26	210	25	190	15	170	-	-
	내부 평가급	3직급 이상	16	267	19	233	26	200	27	167	12	133	-	-
		4직급 이하	일괄 200%의 지급률 적용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3직급 이상	12	210	24	184	35	158	17	131	12	105	0.21	0
		4직급 이하	14	198	22	178	36	158	16	138	12	118	0.02	0
	내부 평가급	3직급 이상	12	267	24	233	35	200	17	167	12	133	0.21	0
		4직급 이하	일괄 200%의 지급률 적용										0.02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여섯째 등급 제외)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수력원자력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전KDN은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4절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10명, 지원금액은 22억원임

한전KDN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19	140	191	185	183	110
지원금액	2,205,000	2,600,000	3,545,000	3,525,000	3,525,000	2,155,000
1인당 지원 한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4절(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근속 1년 이상 재직 직원 등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매월 균등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전KDN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전KDN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3.0	3.0	2.0~3.0	2.0	2.0	2.0	2.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준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전KDN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293	2.0	5,68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전KDN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전KDN은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노사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 수준에 부합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2023년 3분기 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전KDN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전KDN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2,725	17,513,696	19,848,038	37,361,734
2021	2,848	17,131,928	21,350,426	38,482,354
2022	2,860	17,043,615	21,892,137	38,935,752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전KDN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전KDN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부장 등	B	10	210	20	189	40	158	20	126	10	105	-	-
		지사장 등		10	189	20	181	40	158	20	134	10	126	-	-
		팀원		10	173	20	168	40	158	20	147	10	142	-	-
		4직급 이하		10	168	20	164	40	158	20	151	10	147	-	-
	내부 평가급	부장 등	B	10	240	20	224	40	200	20	176	10	160	-	-
		지사장 등		10	220	20	215	40	200	20	185	10	180	-	-
		팀원		10	215	20	210	40	200	20	190	10	185	-	-
		4직급 이하		10	210	20	207	40	200	20	194	10	190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부장 등	B	10	210	20	189	40	158	20	126	10	105	-	-
		지사장 등		10	189	20	181	40	158	20	134	10	126	-	-
		팀원		10	173	20	168	40	158	20	147	10	142	-	-
		4직급 이하		10	168	20	164	40	158	20	151	10	147	-	-
	내부 평가급	부장 등	B	10	240	20	224	40	200	20	176	10	160	-	-
		지사장 등		10	220	20	215	40	200	20	185	10	180	-	-
		팀원		10	215	20	210	40	200	20	190	10	185	-	-
		4직급 이하		10	210	20	207	40	200	20	194	10	190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부장 등	C	10	80	20	72	40	60	20	48	10	40	-	-
		지사장 등		10	72	20	69	40	60	20	51	10	48	-	-
		팀원		10	66	20	64	40	60	20	56	10	54	-	-
		4직급 이하		10	64	20	63	40	60	20	57	10	56	-	-
	내부 평가급	부장 등	C	10	240	20	224	40	200	20	176	10	160	-	-
		지사장 등		10	220	20	215	40	200	20	185	10	180	-	-
		팀원		10	215	20	210	40	200	20	190	10	185	-	-
		4직급 이하		10	210	20	207	40	200	20	194	10	190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전KDN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전KPS(주)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695명, 융자금액은 445억원임

한전KPS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536	579	656	713	745	695
융자금액	19,979,027	24,180,402	35,593,397	44,581,989	50,028,464	44,472,342
1인당 지원 한도	80,000	8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7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 운영지침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무주택자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0년, 15년, 20년 중 상환기간 선택 후 원금균등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전KPS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전KPS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2.0	2.0	2.0	2.0~2.25	2.0~2.25	2.0~2.25	2.0~2.25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전KPS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전KPS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한도
100	2.0~4.6	11,672,900	미개정	81	10,471,900	개정	150,00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전KPS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전KPS(주)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7절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577명, 지원금액은 195억원임

한전KPS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491	2,496	2,553	2,542	2,647	2,577
지원금액	17,842,804	14,896,356	17,753,934	19,250,585	20,092,854	19,535,784
1인당 지원 한도	40,000	15,000	30,000	30,000	3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7절 소액대부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질병치료비 총당, 본인결혼 자금 등의 사유로 신청한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상환기간 최대 48개월, 연 2.5%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전KPS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전KPS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0.5	0.5	0.5	1.0	1.0	1.0	1.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전KPS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전KPS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한도
1,337	0.5~2.5	16,359,120	미개정	79	2,370,000	개정	30,00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전KPS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전KPS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11명임

한전KPS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578	211	10	0	20	0	73	108	11	5	68	0	8	5	11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전KPS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한전KPS는 2023년 6월 상벌규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금품 관련 징계 처분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 한전KPS는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2억 166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11	3	67	0	81
평가 등급	B 4명 D 7명	B 2명 C 1명	B 33명 C 34명	-	B 39명 C 35명 D 7명
징계연도	'18년 11명	'18년 1명 '20년 1명 '21년 1명	'18년 34명 '19년 26명 '20년 5명 '21년 2명	-	'18년 46명 '19년 26명 '20년 6명 '21년 3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5,624	3,236	192,797	-	201,657

주: 1.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2021. 10. 성과급 미지급 규정 마련

- 한전KPS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4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전KPS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5.3.	성희롱	5	0	5	0.0
2020.10.15.	성추행	5	2	3	40.0
2021.12.20.	성희롱	5	2	3	40.0
2023.7.17.	성희롱	5	3	2	60.0

- 한전KPS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전KPS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전KPS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6,619	46,733,567	52,103,490	98,837,057
2021	6,703	40,413,412	53,258,935	93,672,347
2022	6,642	47,485,290	52,761,503	100,246,793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전KPS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이 10% 이하에 그치거나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전KPS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B	8	222	24	204	39	180	24	162	6	144	0	0
	내부평가급		8	247	24	227	39	200	24	180	6	160	0	0
2022	경영평가 성과급	B	8	200	25	179	39	158	23	137	6	121	0	0
	내부평가급		8	253	25	227	39	200	23	173	6	153	0	0
2023	경영평가 성과급	B	9	228	21	204	42	180	21	156	8	138	0	0
	내부평가급		9	253	21	227	42	200	21	173	8	153	0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전KPS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 현황

-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자산은 59조 2,701억원, 부채는 51조 2,921억원, 자본은 7조 9,780억원으로 나타남
 - 2022년 자산은 2021년 대비 18조 2,385억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9조 1,258억원은 원료비미수금¹⁾이 포함된 기타비금융자산의 증가분에 기인함
 - 부채는 2021년 33조 6,060억원 대비 17조 6,86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외부차입으로 유동금융부채가 16조 5,277억원 증가함에 기인함
-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매출액은 50조 3,018억원으로 2021년 26조 1,568억원 대비 24조 1,450억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조 140억원, 당기순이익은 2,584억원 증가함
 - 2022년 매출액의 증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천연가스 판매단가 상승 및 판매물량 증가에 기인함

한국가스공사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자산	377,718	372,595	341,474	410,316	592,701	182,385
부채	306,907	305,553	275,887	336,060	512,921	176,861
자본	70,811	67,042	65,587	74,256	79,780	5,524
매출	249,856	239,038	200,041	261,568	503,018	241,450
영업손익	11,087	11,858	9,506	10,018	20,158	10,140
당기순손익	3,053	816	△936	5,945	8,529	2,584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 1)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연동제 유보로 인하여 LNG 구매비용 대비 낮은 요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을 원료비미수금(자산)으로 인식하고 차기 이후 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고 있음

나. 주요 쟁점

나-1) 수익성

-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은 2020년을 제외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됨
 - 2022년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4.0%, 당기순이익률 1.7%로 영업이익률은 전기 대비 0.2%p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률은 0.6%p 하락함
 - 2020년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4,512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해외사업자산손상 등에 따른 영업외손익 감소로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감소함
- 한국가스공사가 적정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원료비 손실로 인한 매출원가를 취소 후 대신 자산으로 인식하는 원료비미수금 회계처리²⁾에 따른 것임
 -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LNG 가격 상승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원료비미수금 회계처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당기순이익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수금은 미래 가스요금을 통해 회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미수금 고려 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한국가스공사 민수용 원료비미수금(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원료비미수금	6,200	12,817	6,911	17,656	85,856	68,200

주: 1. '20.8월 도시가스요금 용도 구분(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으로 '18~'20년은 도시가스 전체 미수금임

2.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 상 '기타비금융자산'으로 표기됨

자료: 한국가스공사

2)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른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가스요금 동결)되면 LNG 가격(원료비)의 상승분을 가스요금에 반영할 수 없음에 따라 가스를 원가 대비 낮은 단가(요금)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에 반영하여 향후 보전' 가능하다는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향후 받을 수 있는 자산(원료비미수금)'으로 인식하고, 동 미수금은 향후 가스요금에 반영하여 회수됨

한국가스공사 주요 수익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이익률	4.4	5.0	4.8	3.8	4.0	0.2
당기순이익률	1.2	0.3	△0.5	2.3	1.7	△0.6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2) 재무건전성

- 2021~2022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의 지속적인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1년 2조 7,429억원, 2022년 15조 3,714억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21-2022년 LNG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비가 상승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증가하였으나, 매출 관련 현금유입 증가(판매단가 상승)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한국가스공사 현금흐름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4,480	13,091	29,220	△27,429	△153,714	△126,285
투자활동 현금흐름	△7,828	△7,344	△7,508	△7,491	△4,077	3,414
재무활동 현금흐름	11,566	△5,720	△21,709	34,878	157,892	123,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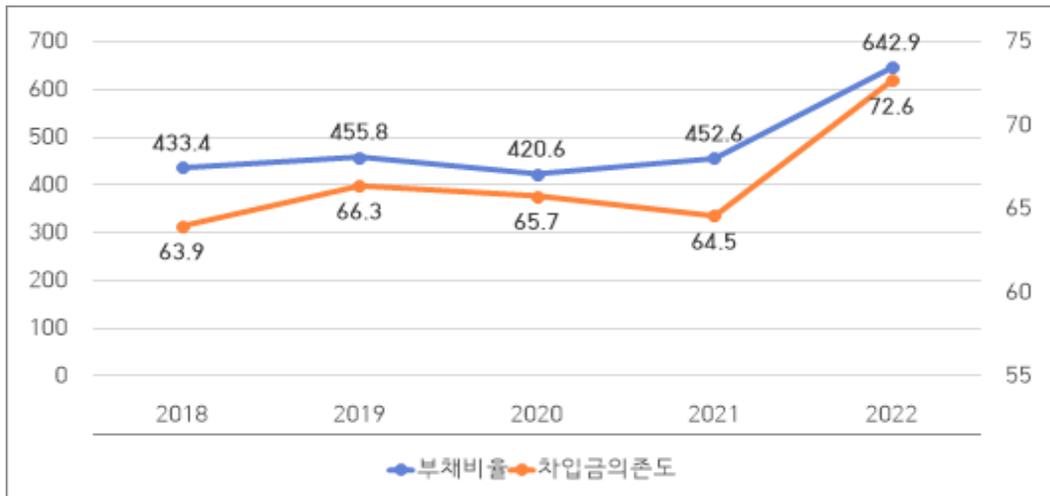
자료: 한국가스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따른 2022년 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 부채비율은 2021년 452.6% 대비 2022년 642.9%으로 190.3%p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72.6%로 2021년 대비 8.1%p 증가함

한국가스공사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부채비율	433.4	455.8	420.6	452.6	642.9	190.3
차입금의존도	63.9	66.3	65.7	64.5	72.6	8.1



주: 1.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차입금의존도는 한국가스공사 제출 (사채 및 차입금 ÷ 총자산) × 100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 미수금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공시 투명성 제고 필요

가. 현황

- 원료비 연동제는 천연가스 원료비를 유가와 환율에 따른 LNG 도입가격에 연동 시키고자 1998년 8월 시행된 제도임
 -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에 따르면, 민수용의 경우 ‘민수용 산정원료비가 민수용 기준원료비를 $\pm 3\%$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되며 ‘조정주기는 2개월(홀수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LNG 가격 급등락 시 연동제를 일시 유보할 수 있는데, 시행지침¹⁾에서는 연동제 유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에 원료비손실이 발생하면 향후 동 손실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여 보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가스요금 동결 및 LNG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적정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동 원료비 손실로 인한 매출원가를 취소 후 대신 자산으로 인식하는 원료비미수금 회계처리에 따른 것
 - 2008년 LNG 가격 급등으로 연동제를 유보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미수금은 2012년 5조 5,356억원까지 누적되었으며, 2017년 전액 회수된 바 있음
 - 2021년 다시 LNG 가격이 급등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미수금은 2022년 8조 5,856억원, 2023년 6월 기준 12조 2,435억원까지 증가하였음

2012~2023년(6월 말) 민수용 원료비미수금

(단위: 조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6
미수금(연도말)	5.5	5.2	4.3	2.7	0.9	△0.1	0.6	1.3	0.7	1.8	8.6	12.2

주: '20.8월 도시가스요금 용도 구분(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으로 '12~'20년은 도시가스 전체 미수금임
자료: 한국가스공사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02-6788-3782)

1)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별표3]

5. 비상시 연동제 유보

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인해 원료비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가스가격 안정 시 원료비 손실분을 가격에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향후 국민이 가스요금으로 내게 될 원료비미수금 이자 비용 금액 및 산정 방법을 공개하여 가스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향후 가스요금으로 회수될 원료비미수금에 동 미수금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 되는 이자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보고서에 따르면 원료비미수금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금융부채 잔액(사채 및 차입금의 기초·기말 잔액) 및 관련 이자비용을 통해 추정이자율을 산출하였음

2018~2022년 한국가스공사 이자율 및 민수용 원료비미수금 이자비용 추정

(단위: 억원, %)

특성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
한국가스 공사 사채 및 차입금	기초잔액(A)	224,008	241,937	247,570	224,946	264,947	431,030	
	기말잔액(B)	241,937	247,570	224,946	264,947	431,030	395,415	
	평균잔액 (C=(A+B)/2)	232,973	244,754	236,258	244,947	347,989	413,223	
이자비용(D)		7,843	7,578	6,788	6,251	9,406	8,037	
추정이자율(E=D/C)		3.4	3.1	2.9	2.6	2.7	3.9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	기초잔액(F)	0	6,200	12,817	6,911	17,656	85,856	
	기말잔액(G)	6,200	12,817	6,911	17,656	85,856	122,435	
	평균잔액 (H=(F+G)/2)	3,100	9,509	9,864	12,284	51,756	104,145	
이자비용 추정 (H-H/(1+E))		102	286	278	305	1,362	3,899	6,232

- 주: 1. 2023년 2분기 말 잔액을 사용하여 2023년 동안 발생할 이자비용을 추정함
 2. 원료비미수금 내에는 당기 발생 이자비용만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함
 3. 2018년 기초는 원료비미수금 잔액이 없음
 4. 상기 분석에 사용된 원료비미수금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임
 자료: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원료비미수금은 ① 원료비 손실로 인한 정산 미수금과 ② 이자비용(당해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 결과, 2022년 원료비미수금 8조 5,856억원 중 이자비용은 1,362억원, 2023년(연말 가정) 원료비미수금 12조 2,435억원²⁾ 중 이자비용은 3,899억원이며, 누적 기준 6,232억원으로 추정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한국가스공사의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 가스요금 산정구조, 근거규정, 연도별 요금 원가정보(총괄표) 등 가스요금에 대한 정보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음
 - 원료비미수금 역시 향후 국민이 납부할 가스요금으로 정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원금, 이자비용 등 구분) 및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수용 도시가스 소비자인 국민은 원료비미수금 내 한국가스공사 이자비용이 포함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미수금에 포함되는 이자비용 및 산정방식을 공개하여 가스요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동 분석에서 2023년 원료비미수금, 이자비용, 사채 및 차입금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 금액을 사용하였음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LNG 관련 해외지분투자 (규제사업)를 요금기저에서 차감 필요

가. 현황

- 가스요금은 천연가스 제공 시 소요된 취득원가(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 중 원료비를 제외한 공급비용은 ① 적정원가와 ② 적정투자보수로 구분
 - ① 적정원가는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된 규제서비스¹⁾ 관련 비용(영업비용, 영업외비용(지급이자 제외), 법인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함
 - 한국가스공사는 공공성과 독점성이 인정되는 도입, 생산, 공급, 판매 등 국내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규제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음
 - 한편 ② 적정투자보수는 천연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수이며,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 요금기저에 가산 반영된 해외지분투자액은 가스요금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며, 동 지분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수령액은 적정원가(영업외수익)에서 차감 반영되어 가스요금의 감소 효과를 가져옴
 - 이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전력구입 관련 지분투자²⁾를 규제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02-6788-3782)

1)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제5조(서비스 분류 범위) ② 규제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공사가 제공하는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2) 한국전력공사는 100% 종속회사인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관련 자회사로부터 전력(원재료)을 구입하고 있다.

가스요금 산정기준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비교

구분	가스요금	전기요금
규제서비스에 해외지분투자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각 요금별 산정기준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관련 조항	제11조(요금기저의 산정) ⑥ 지분투자금액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 투자금액으로 한다. 제9조(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기준) 규제서비스로 분류된 해외자원개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및 관련 자산처분손익은 (..)포함	제15조(서비스의 분류) ④ 비규제서비스는 규제서비스 이외에 전기판매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사업 등이 해당한다.

자료: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
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금액을 가스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됨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서는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금액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원가’로 판단하여 요금기저에 포함
 - 철도, 도로, 전력 등의 요금(운임)기저에 반영되는 자산을 살펴본 결과, 가스요금에서와 같이 지분투자액을 요금기저에 반영하는 공공요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스요금 산정기준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비교

구분	가스요금
	2.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1. 총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보다 공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료: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관련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지분투자(출자)와 채권투자(대여)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위험이 높은 지분투자는 총괄원가 상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투자는 요금기저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022년 현재 누적 출자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 GLNG 및 호주 Prelude 투자 및 회수 내역을 보면, 피투자회사 입장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지급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비해 후순위임에 따라, 이익 발생 시 배당보다는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됨
 - 2022년 기준 호주 GLNG의 경우, 출자액 2조 1,688억원 관련한 배당 수령액은 없으나, 대여금 2조 2,297억원 관련하여 9,440억원(원금 회수 3,980억원, 이자회수액 5,460억원)이 회수되었음

- 호주 Prelude 역시 1조 2,024억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없으나 9,055억원 대여에 대한 회수액은 1,599억원(원금 회수 886억원, 이자회수액 71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한국가스공사의 해외LNG개발사업 투자 중 출자방식만이 규제서비스로 분류되어 가스요금 총괄원가를 가산(누적출자)하고 감소(배당수령)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대여방식 대비 출자방식의 투자회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연도별 호주 GLNG 및 호주 Prelude 투자 및 회수내역

(단위: 억원)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지분투자 (출자)	3,454	9,043	11,145	1,523	2,743	2,485	1,236	1,605	478	0	0	0	33,712	
채권	투자	8,211	9,702	2,147	7,559	2,304	651	0	0	284	210	284	1 31,352	
	회수 원금	0	0	0	0	0	0	0	135	471	131	1,111	3,018	4,866
	발생 이자	275	921	1,269	1,698	2,273	2,046	1,653	1,674	1,379	1,013	995	1,087	16,283

주: 연도별 액수는 호주 GLNG와 호주 Prelude 투자액 합계를 뜻함

자료: 한국가스공사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지분투자금액을 규제서비스에서 제외하여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스요금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가스공사, 케이씨엘엔지테크 및 KC화물창 소송 관련 우발부채 대비 필요

가. 현황

-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기술력으로 LNG 운반선에서 보관창고 역할을 하는 화물창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선3사(삼성, 대우, 현대)와 공동으로 케이씨엘엔지테크(주)(이하, KLT)를 설립(한국가스공사의 지분율 50.2%)한 바 있음
 - 2022년 말 한국가스공사는 동 회사 투자액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152.5억원이나 2021년 전액 손상 발생에 따라 2022년 말 장부가액은 0원이 됨
 - 참고로, 중국 조선산업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LNG선 화물창 독자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조선3사(삼성, 대우, 현대)는 공동으로 국산 LNG 화물창(KC-1)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음

한국가스공사의 피투자회사 케이씨엘엔지테크(주)

(단위: 백만원, %)

구분	법인명	주요사업	설립일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분율
종속회사	케이씨엘엔지테크(주)	LNG 화물창 설계 및 감리	2016.2.24	15,251	0	50.2

자료: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3년 5월까지 국산 화물창 기술을 활용한 5척의 선박이 삼성중공업 및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어 인도 완료되었으며 이 중 가장 처음 건조된 선박은 2015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한 국적 26, 27호선(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용)이며, 2018년 건조완료되어 SK 해운에 인도되었음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02-6788-3782)

1)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가스공사가 152억원 투자한 종속회사 KLT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종속회사인 KLT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시작된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2023년 6월 기준 확대됨
 - 동 회사는 꾸준히 40억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멤브레인 재료비(2021년 43.6억원, 2022년 34.5억원), 경상개발비(15억원), 무형자산상각비(12억원) 등 고정비용이 매출을 초과하여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음

2021~2023년 케이씨엘엔지테크(주)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6
자산 총액	17,988.8	10,058.9	8,836.3
부채 총액(A)	13,494.2	14,263.5	14,250.8
자본 총액	4,494.7	△ 4,204.7	△ 5,414.5
자본금	30,380.0	30,380.0	30,380.0
미처리결손금	△ 25,885.3	△ 34,584.7	△ 35,794.5
매출	4,939.3	4,231.1	145.1
매출총이익	△ 1,366.7	△ 721.8	△ 239.5
영업손실	△ 4,137.1	△ 3,274.7	△ 1,259.1
당기순손실	△ 3,892.5	△ 8,699.3	△ 1,209.9
유동자산(C)	2,726.2	2,951.4	2,109.5
유동부채(D)	12,737.1	13,916.6	13,878.1
순운전자본(C-D)	△ 10,010.9	△ 10,965.2	△ 11,768.6

자료: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가스공사가 KLT 최초 출자 여부를 판단 시 검토하였던 사업계획과 실제 실적 간 괴리 발생

- 당시 KLT는 2022년 말까지 12척의 선박에 대한 KC-1 화물창 설계 및 감리 및 6건의 멤브레인 제작판매를 계획하였으나, 2023년 5월 기준 실제로 KC-1 화물창 기술이 활용된 대형 LNG 운반선은 총 2척에 불과하며, 2017년 이후 멤브레인 제작판매건은 1건도 없는 실정임
- 초기 사업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KLT는 2021년부터 20억원의 주주배당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3년 6월 기준으로, KLT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KC화물창 소송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 및 종속회사(KLT)에 발생할 우발부채 위험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출원가 추가 발생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삼성중공업은 2018년 국적 26, 27호선²⁾(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용)을 건조하여 SK해운에 인도하였음
- SK해운은 동 선박의 첫 운송에서 ‘콜드 스팟(결빙현상)’³⁾이 나타나는 품질문제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였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수리 및 시험선적 등을 완료하여 운항이 가능함을 SK해운에 통보하였으나(2023년 3월) SK해운은 동일 문제로 인해 운항을 중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 및 SK해운과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한국가스공사가 피고인 3건은 설계문제 및 화물창 결함으로 인한 삼성중공업 및 SK해운이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며, 한국가스공사가 원고인 1건은 SK해운의 선박 운항 중단 및 대체선 투입 거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추가로 지출한 LNG 수송비용을 청구한 건임
- 2020년 10월, 선박건조지연 소송 1심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KLT는 삼성중공업에 123억원(원금 88억원 포함)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KLT는 삼성중공업(주)에 2021년에 20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 말까지 잔여배상금을 10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3년 내 103억원의 여유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SK세레니티(Serenity), SK스피카(Spica)

3) 콜드 스팟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에서 LNG에서 발생한 냉기가 흘러나온 뒤 내부 선체까지 도달해, 내부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

선박건조지연 소송 진행상황

특성	내역
2020.10.	<p style="text-align: center;">1심판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KLT는 삼성중공업에 88억원 원금을 포함하여 123억원 손해배상 ⇨ KLT는 삼성중공업(주)에 2021년에 20억원, 2023년 말까지 잔여배상금 103억원 지급 합의</p>
2020.10.	KLT - 1심 판결 취소 항소심 제기
2020.11.	삼성중공업(주) - 피고의 범위에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하고 소송가액을 229억원으로 하는 항소심 제기
2023.9.20.(예정)	변론재개 예정 (추후 판결일자 확정)

자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89%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는 미달성

한국가스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가스공사	330,645	2,957	0.89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가스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1.10%, 2021년 0.97%, 2022년 0.89%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가스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294,042	3,247	1.10
2021	274,243	2,652	0.97
2022	330,645	2,957	0.89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가스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가스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70명임

한국가스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320	170	12	0	22	0	55	81	15	11	6	3	6	11	118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가스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가스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5	7	2	2	6	0
평균 처분기간	2	2.4	3	2	2.2	0
보수지급액	46,692	67,746	32,742	11,861	51,742	0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7조(징계처분자의 보수)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기간 동안 감액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 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가스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4,274	-	43,118,633	43,118,633
2021	4,361	18,354,227	43,186,417	61,540,644
2022	4,256	17,170,513	42,926,283	60,096,796

주: 임직원 수는 연도별 성과급 지급 대상 인원 기준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호봉제의 최고 등급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호봉제의 최고 등급 지급률과 차하위 등급의 지급률 차이가 2배 미만에 그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가스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D	-	-	-	-	-	-	-	-	-	-	-	-
		내부 평가급	연봉제 (상반기)	9	327	18	286	42	245	17	204	15	163	0	0
	연봉제 (하반기)		10	327	18	286	40	245	18	204	14	163	0	0	
	호봉제		일괄 250% 지급률 적용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연봉제 (상반기)	C	14	119	18	104	34	89	17	74	17	59	1	0
		연봉제 (하반기)	C	13	119	18	104	34	89	18	74	16	59	1	0
		호봉제		5	123	18	115	50	106	18	98	6	89	3	0
	내부 평가급	연봉제 (상반기)	C	14	279	18	244	34	209	17	174	17	140	1	0
		연봉제 (하반기)	C	13	279	18	244	34	209	18	174	16	140	1	0
		호봉제		5	288	18	269	50	250	18	231	6	212	3	0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연봉제 (상반기)	C	13	60	20	53	33	45	17	38	16	30	1	0
		연봉제 (하반기)		14	60	21	53	32	45	16	38	17	30	1	0
		호봉제		4	116	19	108	51	100	18	92	6	84	3	0
	내부 평가급	연봉제 (상반기)	C	13	300	20	263	33	225	17	188	16	150	1	0
		연봉제 (하반기)		14	300	21	263	32	225	16	188	17	150	1	0
		호봉제		4	288	19	269	51	250	17	231	6	212	3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가스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요금 미회수로 인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가. 현황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22년 자산은 7조 4,781억원, 부채는 5조 8,111억원, 자본은 1조 6,670억원으로 나타남
 - 부채는 2021년 대비 1조 1,169억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1,562억원 감소함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22년 매출액은 4조 1,730억원으로 2021년 2조 5,368억원 대비 1조 6,362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익은 전년 대비 4,436억원, 당기순손익은 2,055억원 감소함
 - 2022년 매출액의 증가는 열, 전기 판매량 증가 등에 따른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열 판매에서 2,079억원, 전기 판매에서 1조 4,308억원이 증가함
 - 원재료(천연가스) 가격 증가로 매출액 증가(64.5%) 대비 매출원가(87.1%) 증가 폭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영업손익이 감소함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자산	56,580	58,926	60,731	65,174	74,781	9,607
부채	40,978	43,632	42,694	46,942	58,111	11,169
자본	15,602	15,294	18,037	18,232	16,670	△1,562
매출	24,873	23,679	20,989	25,368	41,730	16,362
영업손익	145	422	1,328	397	△4,039	△4,436
당기순손익	△2,265	△256	279	215	△1,840	△2,055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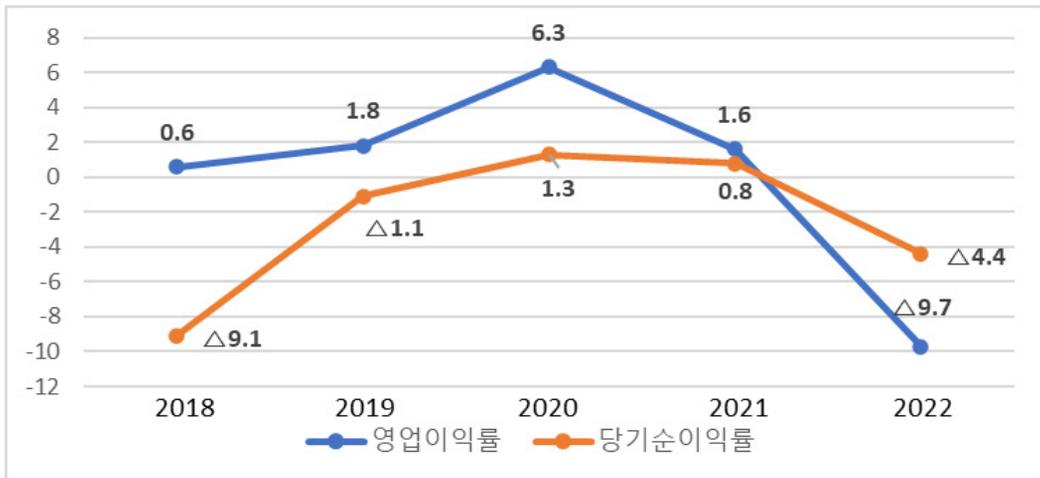
나-1) 수익성

- 2022년에는 2018년 이후 최초로 영업이익률이 음(-)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률 또한 2020, 2021년 양(+)에서 음(-)으로 전환됨¹⁾
 - 2022년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Delta 9.7\%$, 당기순이익률 $\Delta 4.4\%$ 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1.2\%p$ 감소, 당기순이익률은 $5.3\%p$ 감소함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수익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영업이익률	0.6	1.8	6.3	1.6	$\Delta 9.7$	$\Delta 11.2$
당기순이익률	$\Delta 9.1$	$\Delta 1.1$	1.3	0.8	$\Delta 4.4$	$\Delta 5.3$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2018년의 당기순이익률 $\Delta 9.1\%$ 는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사업에서 자산손상 약 2,000억이 발생함에 기인함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성 악화는 원재료(천연가스) 상승으로 매출원가가 상승했으나, 이를 열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에 기인함
 - 2022년 판매단가는 152,626.6원/Gcal이고, 생산단가는 160,839.0원/Gcal로 생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8,212.4원/Gcal 높음

한국지역난방공사 판매단가 및 생산단가(2018~2022)

(단위: 원/Gcal)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판매단가(A)	97,394.6	96,577.3	86,222.8	97,217.0	152,626.6
생산단가(B)	93,307.4	91,625.9	78,330.7	92,681.8	160,839.0
차이(A-B)	4,087.2	4,951.4	7,892.1	4,535.2	△8,212.4

주: 판매단가는 매출액(기타매출 제외)÷(열+전기+냉수 판매량)이며, 생산단가는 (매출원가+판매비)÷(열+전기+냉수 생산량)임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2) 재무건전성

-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영업손실 4,039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매년 약 5천억원의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 투자에 자금이 소요되고 있어 2021년 대비 2022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부채가 증가함
 - 설비 투자(대구, 청주, 양산 CHP²개체공사 등) 등으로 차입금 규모 증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채 및 차입금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사채 및 차입금	27,388	30,273	28,593	30,051	35,802	5,751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CHP(Combined Heat and Power)는 통상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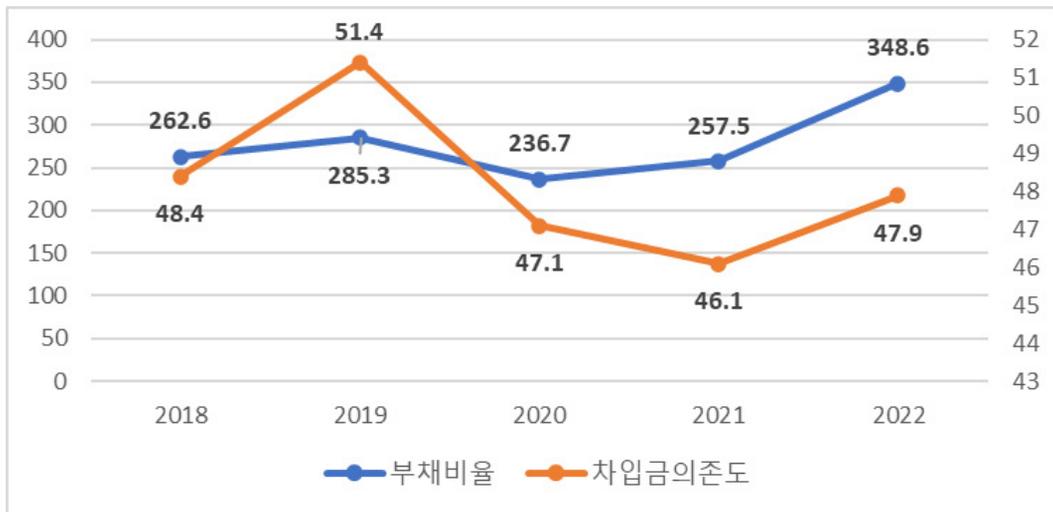
■ 2022년의 차입금 증가로 부채비율은 348.6%, 차입금의존도는 47.9%로 나타났으며, 각각 전년 대비 91.1%p, 1.8%p 증가하였으므로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부채비율은 통상적으로 200% 이하인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사의 부채비율은 원재료 매입채무 증가로 인하여 약 350%로 나타남
- 차입금의존도는 통상적으로 30% 이하인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차입금의존도는 이를 상회하는 47.9%로 나타남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2018~2022)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부채비율	262.6	285.3	236.7	257.5	348.6	91.1
차입금의존도	48.4	51.4	47.1	46.1	47.9	1.8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30%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미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지역난방공사	211,041	643	0.3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30%, 2021년 0.44%, 2020년 0.36%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229,434	825	0.36
2021	250,599	1,092	0.44
2022	211,041	643	0.3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 발생 시 그 현황을 공시¹⁾하여야 함
-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17건의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최근 5년간 한국중부발전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간 누적
한국중부발전	3	7	2	3	2	17

자료: 한국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환경법규 위반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과태료는 총 2,150만원임

최근 5년간 한국중부발전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등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벌금	과태료	과징금
2018	2,000	-	2,000	-
2019	9,200	-	9,200	-
2020	5,000	-	5,000	-
2021	3,160	-	3,160	-
2022	2,140	-	2,140	-
합계	21,500	-	21,500	-

자료: 한국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 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시장형 공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 사항 최다 발생 기관은 한국중부발전
 - 한국중부발전의 2022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2건으로 전체 시장형 공기업(9건) 중 22.2% 차지
 - 한국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17건으로, 전체 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103건)의 16.5% 차지

최근 5년간 한국중부발전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간 누적
한국중부발전(a)	3	7	2	3	2	17
전체 시장형 공기업(b)	28	27	11	28	9	103
비중(a/b)	10.7	25.9	18.2	10.7	22.2	16.5

자료: 한국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폐수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등 유사한 위반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관리 철저 필요
 - 한국중부발전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수나 기력 등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나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등 유사한 위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관리 철저 필요
 - 특히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은 발전시설 주변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의 필요
 - 최근 5년간 한국중부발전이 공시한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중부발전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

연도	위반내용	위반법령	건수
2018	폐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저탄장 세륜시설 일부 누수	「물환경보전법」	2
	시스템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1
2019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법」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고장 방치, 탈황설비 외벽 부식 마모 등	「대기환경보전법」	4
	폐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물환경보전법」	1
	폐유 저장용기 방치	「폐기물관리법」	1
2020	기력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1
	협약기준초과 조치계획 미제출	「환경영향평가법」	1
2021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소음진동관리법」	1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력 사용전 정도검사 미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
2022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소음진동관리법」	1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

자료: 한국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기술(주)의 사옥관리 자회사 한전기술서비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가. 현황

- 한국전력기술(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한전기술서비스(주)에 5억원을 출자함
 - 한전기술서비스(주)는 한국전력기술(주)의 사옥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며, 설립 시 자본금은 5억이며, 2022년 말 기준 인원은 일반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을 합하여 총 197명 이고, 2022년 매출액은 161.8억원임

한국전력기술(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사업 범위	설립일	자본금	인원	매출액
한전기술서비스(주)	사옥관리 용역 등	2020-04-01	500	197	16,180

주: 인원과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며, 인원은 일반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인원의 합계임
자료: 한국전력기술(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사옥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한전기술서비스(주)는 모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과 안정적인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이익을 확대하여 2022년 말 기준 32.7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 중임
 - 한국전력기술(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¹⁾에 근거하여 출자회사인 한전기술서비스(주)와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함
 - 한전기술서비스(주)는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이며, 2020년 4월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확대되고 있음
 - 그 결과, 2022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5억원의 6.5배에 이르는 이익잉여금 32.7억원이 내부 유보 중이며, 여유자금 추정액은 33.7억원에 이룸

한전기술서비스(주)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본금	이익잉여금	여유자금 추정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	500	46	518	4,989	555	464
2021	500	1,666	583	15,984	1,568	1,242
2022	500	3,278	3,374	16,180	1,822	1,493

주: 여유자금 추정액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자료: 한국전력기술(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전기술서비스(주)는 모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와 사옥관리용역과 관련하여 현원보다 많은 인원으로 계약함으로써 매출액을 확대할 수 있었고, 한국전력기술(주)의 입장에서는 계약인원과 현원의 차이만큼 더 많은 용역비를 지급하여 비용이 확대됨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 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회사 내부 이익의 확대는 자회사의 자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익 증대 외에도 모회사와의 안정적인 용역계약,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등에 의한 다양한 이익 증대 등에 기인함

한전기술서비스(주) 계약 인원 대비 현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약 인원	현원	차이	차이비율
2020	190	151	39	25.8
2021	190	182	8	4.4
2022	190	181	9	5.0

주: 계약 인원과 현원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인원은 일반관리비율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현원과 계약 인원의 차이를 계산하지 않음

자료: 한국전력기술(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모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은 최대 주주인 한국전력공사 등과 안정적인 계약을 통하여 매년 15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중이며, 2020년부터는 50% 이상을 한국전력공사 등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은 원자력 발전소 종합설계 등을 주로 수행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전체 지분의 65.77%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임
 - 한국전력기술(주)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129~2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이 중 40% 이상을 배당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의 비용 확대는 최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배당재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한국전력기술(주)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433,701	448,635	431,723	433,127	505,291
영업이익	21,499	44,069	29,571	10,128	17,954
당기순이익	12,937	26,398	20,160	16,452	17,954
배당액	5,326	11,793	10,728	9,054	10,766
배당성향	41.2	44.7	53.2	55.0	60.0

자료: 한국전력기술(주)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기술(주)은 자회사인 한전기술서비스(주)와 용역계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약 인원 등의 차이분으로 인하여 자회사 내 잉여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 유보 중인 잉여금은 배당 등을 통하여 회수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력기술(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주)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37%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전력기술은 미달성

한국전력기술(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전력기술(주)	102,410	374	0.3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금융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기술(주)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37%, 2021년 0.61%, 2020년 0.07%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전력기술(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117,502	87	0.07
2021	104,312	635	0.61
2022	102,410	374	0.3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전력기술(주)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기술(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제3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73명, 지원금액은 14억원임

한국전력기술(주)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33	132	107	112	123	73
지원금액	2,061,180	2,441,200	1,821,500	1,951,196	2,369,500	1,392,500
1인당 지원 한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제3조(대부사유)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입사 1년 이상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5년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기술(주)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기술(주)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	2.5	2.5	2.5	2.5	2.5	2.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전력기술(주)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96	2.5	3,762,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전력기술(주)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기술(주)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1명임

한국전력기술(주)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417	11	2	0	2	0	3	4	1	2	0	1	0	2	6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기술(주)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전력기술(주)는 재산비위, 성비위, 부정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4,349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성과평가 시 감점 처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1	2	-	1	4
평가 등급	B 1명	D 1명, 미정 1명	-	S 1명	-
징계연도	'19년 1명	'21년 1명 '22년 1명	-	'21년 1명	-
과다 지급된 성과급	5,488	15,993	-	22,012	43,493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한국전력기술(주)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기술(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전력기술(주)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2,202	15,754,838	22,895,951	38,650,789
2021	2,185	18,454,029	23,175,931	41,629,960
2022	2,121	8,483,430	11,281,305	19,764,735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전력기술(주)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다섯째 등급의 인원 비중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직급 이하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전력기술(주)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2직급 이상	B	10	175	19	153	44	131	17	109	10	87	-	-
		3직급 이하	B	16	225	22	208	48	200	12	192	2	175	-	-
	내부 평가급	2직급 이상	-	10	259	19	227	44	194	17	162	10	129	-	-
		3직급 이하	-	16	152	22	141	48	135	12	129	2	118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2직급 이상	B	10	204	18	179	46	153	17	128	9	102	-	-
		3직급 이하	B	12	225	21	208	47	200	16	192	4	175	-	-
	내부 평가급	2직급 이상	-	10	260	18	227	46	195	17	162	9	130	-	-
		3직급 이하	-	12	177	21	164	47	158	16	151	4	138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2직급 이상	B	10	193	17	169	48	145	19	121	6	97	-	-
		3직급 이하	B	17	224	19	212	39	200	16	188	9	176	-	-
	내부 평가급	2직급 이상	-	10	257	17	225	48	193	19	160	6	128	-	-
		3직급 이하	-	17	168	19	159	39	150	16	141	9	132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전력기술(주)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주)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장형 공기업으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 시키기 위하여 카지노, 호텔, 리조트 등 관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
 - (주)강원랜드는 2018년 공기업으로 처음 지정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카지노, 호텔, 콘도, 골프, 스키, 워터월드 등 사업부문별로 구분회계를 시행
- (주)강원랜드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2,706억 8,600만원이고, 영업이익은 2,175억 6,5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156억 1,300만원
 - (주)강원랜드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22억 5,300만원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02억 6,000만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261억 9,500만원 증가

최근 5년간 (주)강원랜드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b-a)
매출액	1,438,059	1,520,080	478,579	788,433	1,270,686	482,253
영업이익	430,700	501,153	△431,584	△52,695	217,565	270,260
당기순이익	297,237	334,654	△275,879	△10,582	115,613	126,19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나. 주요 쟁점

- (주)강원랜드는 2022년 기준 카지노와 골프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에서 영업 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
 - 카지노 부문은 2022년 3,746억원의 영업이익을, 2,2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하이원골프는 21억원의 영업이익을, 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그랜드호텔은 705억원의 영업손실을, 4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팰리스호텔(△78억원), 하이원콘도(△256억원), 하이원스키(△156억원), 하이원워터월드(△110억원), 기타(△18억원) 부문 모두 2022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2022년 (주)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카지노	1,109,960	635,568	474,393	374,620	224,271
그랜드호텔	101,375	151,984	△50,609	△70,458	△48,179
팰리스호텔	5,856	15,313	△9,457	△11,325	△7,773
하이원콘도	29,571	62,569	△32,997	△37,217	△25,614
하이원골프	10,441	7,586	2,855	2,138	1,582
하이원스키	14,748	33,227	△18,479	△21,259	△15,626
하이원워터월드	8,545	23,330	△14,786	△15,997	△11,003
기타	13	2,241	△2,228	△2,564	△1,769
조정	△11,092	△11,092	-	-	-
합계	1,269,418	920,726	348,692	217,938	115,88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2022년에 당기순손실을 발생한 사업부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존재
 - 카지노와 골프를 제외한 호텔, 콘도, 스키, 워터월드 등 사업부문은 최근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
 - 특히 호텔과 콘도, 스키 등 관광사업의 경우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주)강원랜드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카지노	399,058	418,626	△139,321	126,161	224,271
그랜드호텔	△34,209	△29,034	△62,416	△60,116	△48,179
팰리스호텔	△6,852	△6,074	△6,915	△72,67	△7,773
하이원콘도	△25,397	△24,422	△33,584	△33,792	△25,614
하이원골프	△466	△894	△769	930	1,582
하이원스키	△14,747	△16,188	△18,905	△21,340	△15,626
하이원워터월드	△2,218	△6,437	△10,065	△11,619	△11,003
기타	△17,850	36	△6,787	△4,869	△1,769
합계	297,319	335,609	△278,762	△11,911	115,88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가. 현황

- (주)강원랜드가 출자한 출자회사는 하이원추추파크, 하이원파트너스, 키즈라라 등 총 9개로, 총 2,822억 2,300만원을 투자
- (주)강원랜드 출자회사는 4개 자회사와 5개 출자회사로 구분 가능
 - 자회사의 경우 강원도 정선 외 폐광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하이원추추파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이원파트너스,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가 있음
 - 자회사 외 5개 출자회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지자체를 최대주주로 하는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에 (주)강원랜드가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키즈라라, 문경레저타운,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동강시스타, 대천리조트가 있음
 - (주)강원랜드 출자회사 중 하이원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청산되었으며, 동강시스타 및 대천리조트는 각각 2019년 및 2020년에 매각됨.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하반기에 청산이 종결될 예정

(주)강원랜드 출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명	지역	설립일자	주요사업	(주)강원랜드 투·출자액	(주)강원랜드 지분율	현 상황
(주)하이원 추추파크	강원 삼척	'10.01.25	철도 체험형 키즈테마 리조트	83,365	99.64%	정상 영업
(주)하이원 엔터테인먼트	강원 태백	'09.01.02	게임, 애니메이션 컨택센터	64,700	100%	청산완료 예정 ('23년 하반기)
(주)하이원 파트너스	강원 정선	'19.12.18	시설유지관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800	100%	정상 영업
(주)키즈라라	전남 화순	'12.01.06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20,000	30.54%	정상 영업
(주)문경 레저타운	경북 문경	'03.02.25	골프,골프텔	18,000	27.27%	정상 영업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법인명	지역	설립일자	주요사업	(주)강원랜드 투·출자액	(주)강원랜드 지분율	현 상황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주)	강원 삼척	'04.08.13	골프	15,000	16.55%	정상 영업
(주)하이원 상동테마파크	강원 영월	'09.10.30	휴양 가든 테마단지	42,458	100%	청산 ('19.4월)
(주)동강시스타	강원 영월	'06.05.15	골프, 콘도, 스파	19,900	8.76%	매각 ('19.1월)
(주)대천리조트	충남 보령	'07.12.26	골프, 콘도	18,000	28.57%	매각 ('20.2월)
합계				282,223		

자료: (주)강원랜드

나. 주요 쟁점

- (주)강원랜드 출자회사 중 하이원추추파크, 키즈라라 등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 철저 필요
 - 최근 5년간 하이원추추파크와 키즈라라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역시 최근 5년 중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순손실 기록

최근 5년간 (주)강원랜드 출자회사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하이원추추파크	△24,899	△1,203	△8,434	△1,074	△1,213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	△249	△243	△1,395	△80	125
(주)하이원파트너스	-	△5	1,056	1,391	550
(주)키즈라라	△928	△418	△516	△1,463	△3,527
(주)문경레저타운	482	804	1,248	2,626	2,809
블랙밸리컨트리클럽	454	798	1,612	2,668	3,183

주: 청산되거나 매각된 하이원상동테마파크, 동강시스타 및 대천리조트 제외
 자료: (주)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하이원추추파크와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키즈라라는 2022년 기준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실 발생(하이원추추파크 △771억 400만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557억 9,800만원, 키즈라라 △26억 7,400만원)

최근 5년간 (주)강원랜드 출자회사별 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취득 가액	장부 가액	취득 가액 (A)	장부 가액 (B)	증감 (B-A)
(주)하이원추추파크	83,365	16,615	83,365	16,615	83,365	10,181	83,365	6,261	83,365	6,261	△77,104
(주)하이원 엔터테인먼트	64,700	10,692	64,700	10,439	64,700	8,988	64,700	8,902	64,700	8,902	△55,798
(주)하이원파트너스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0
(주)키즈라라	20,000	19,120	20,000	18,989	20,000	18,846	20,000	18,393	20,000	17,326	△2,674
(주)문경레저타운	18,000	18,627	18,000	18,860	18,000	19,175	18,000	19,908	18,000	20,681	2,681
블랙밸리컨트리클럽	15,000	15,168	15,000	15,301	15,000	15,564	15,000	16,008	15,000	16,532	1,532

주: 청산되거나 매각된 하이원상동테마파크, 동강시스타 및 대천리조트 제외
 자료: (주)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강원랜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 하이원파트너스(주)와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내부유보금 배당 필요

가. 현황

- (주)강원랜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하이원파트너스(주)에 6억원을 출자함
 - 하이원파트너스(주)는 정부의 고용정책을 위한 방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강원랜드가 100% 출자하여 2019년 12월 18일에 설립됨
 - 하이원파트너스(주)는 건물 종합관리, 골프장 코스 및 슬로프 관리, 회원고객수송 등의 차량 서비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동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8억원이며, 2022년 말 기준 인원은 일반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을 합하여 총 432명이고, 2022년 매출액은 243억원임

(주)강원랜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사업 범위	설립일	자본금	인원	매출액
하이원파트너스(주)	건물종합관리, 주차관리, 발렛파킹, 골프장 코스 및 슬로프 관리, 회원고객수송 용역 등	2019-12-18	800	432	24,302

주: 인원과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며, 인원은 일반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인원의 합계임
 자료: (주)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주)강원랜드의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주)는 모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2022년 말 31.6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 중임
 - (주)강원랜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의2호¹⁾에 근거하여 출자회사인 하이원파트너스(주)와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함
 - 하이원파트너스(주)는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 중이며, 2019년 12월에 설립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2022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되어 내부 유보이익이 확대되고 있음
 - 그 결과, 2022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8억원의 4배에 이르는 이익잉여금 31.6억원이 내부 유보 중이며, 여유자금 추정액은 25.3억원에 이름
 - 모회사인 (주)강원랜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1년 동안 매출의 급감과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이원파트너스(주)는 안정적인 계약을 통하여 1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바 있음

하이원파트너스(주)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본금	이익잉여금	여유자금 추정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9	800	0	795	0	△5	△5
2020	800	1,079	2,131	19,142	1,353	1,056
2021	800	2,348	2,347	23,362	1,749	1,391
2022	800	3,163	2,534	24,303	649	550

주: 여유자금 추정액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자료: (주)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 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편, (주)강원랜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2021년 동안 매출이 급감하여 당기 순손실을 시현하고, 2022년에도 2019년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함
- 그 결과, (주)강원랜드는 주요 주주인 한국관광업공단(36.27%), 정선군(5.02%) 등에 대한 배당을 2020~2021년 동안 실시하지 못하였고, 2022년의 배당은 2019년 이전의 배당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주)강원랜드 주요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1,436,042	1,517,612	477,475	787,377	1,269,418
영업이익	434,851	502,725	△430,880	△52,801	217,938
당기순이익	297,320	335,610	△278,763	△11,911	115,888
배당액	182,465	182,465	0	0	70,959
배당성향	61.39	54.52	0	0	61.38

자료: (주)강원랜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주)강원랜드는 지출 측면에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자회사 내 여유자금의 형태로 유보 중인 잉여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하도록 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강원랜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가. 현황

- (주)강원랜드는 7개 부분 주요사업(카지노·하이원그랜드호텔·하이원팰리스호텔·하이원콘도·하이원골프·하이원스키·하이원워터월드)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최근 3년간 (주)강원랜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20	2021	2022
(주)강원랜드 (등급/점수)	D (71.3점)	D (68.9점)	D (69.5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주)강원랜드는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71.3점(20년), 68.9점(21년), 69.5점(22년)을 평가 받아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80점 이하)을 배정 받았으며, 이는 공기업 전체 평균점수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임
 - (주)강원랜드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점수는 69.5점으로, 101개 주요 공공기관²⁾ 중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됨³⁾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3) 주요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5개 기관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주)강원랜드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0	2021	2022
공기업(평균)	87.3	86.6	86.0
(주)강원랜드	71.3	68.9	69.5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강원랜드의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3년 내내 모든 부분에서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주)강원랜드는 사회적책임과 국민행복 등의 성과 부분에 대한 점수가 특히 더 저조한 상황임
- ‘직원의 친절성 향상’과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례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임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주)강원랜드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주)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주)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주)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주)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주)강원 랜드
2020	89.4	77.1	86.0	60.0	85.1	69.1	87.1	70.8	85.8	54.6
2021	88.6	74.0	85.5	62.4	84.1	65.7	86.5	68.2	85.0	54.8
2022	88.2	75.4	84.8	62.6	83.5	64.2	85.8	69.4	84.0	52.7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점수	79.1점	76.7점	76.4점	69.5점	68.5점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주)강원랜드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4명임

(주)강원랜드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565	164	5	0	40	0	55	64	1	9	10	4	14	14	112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주)강원랜드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주)강원랜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등으로 인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주)강원랜드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이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석유공사 등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인바 참고할 필요가 있음

(주)강원랜드와 타 시장형 공기업과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비교

기관명	징계부가금 규정 내용
(주)강원랜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한국남부발전	「상벌규정」 제47조제7항 채용비리,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배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로 감봉,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금 횡령 또는 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한국서부발전	「인사관리규정」 제168조의2제1항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배임인 경우 해당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인사위원회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배임액의 5배 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할 수 있음
한국석유공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내부규정 신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주)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 (주)강원랜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직원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주)강원랜드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3,696	10,751,902	21,098,709	31,850,611
2021	3,598	13,146,279	29,916,093	43,062,372
2022	3,706	-	31,965,240	31,965,240

주: 내부평가성과급은 총인건비 잔여제원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므로 기준연도 귀속분에 대한 합산 지급액을 기재하였으며, 직원 수는 퇴직자를 포함한 지급시기별 평균 인원 수 기준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주)강원랜드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이 10% 이하에 그치거나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1~'22년 2급 이하 경영평가성과급, 2022~23년 내부평가급 등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주)강원랜드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1급	C	2	142	31	124	61	106	6	89	0	71	-	-
		2급 이하		-	126	22	116	67	106	11	96	2	87	-	-
	내부 평가급	1급	-	1	568	32	499	61	430	5	361	0	292	-	-
		2급 이하	-	-	-	23	203	67	200	10	198	-	-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1급	C	5	117	38	102	44	88	13	73	0	58	-	-
		2급 이하		2	110	24	99	55	88	18	76	1	65	-	-
	내부 평가급	1급	-	-	568	28	499	54	430	18	361	0	292	-	-
		2급 이하	-	12	206	28	203	46	200	12	197	2	194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1급	D	-	-	-	-	-	-	-	-	-	-	-	-
		2급 이하		-	-	-	-	-	-	-	-	-	-	-	-
	내부 평가급	1급	-	-	568	26	499	58	430	17	361	0	292	-	-
		2급 이하	-	3	207	8	203	68	200	17	197	5	194	-	-

- 주: 1.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2022년부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 중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부여 촉진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주)강원랜드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강원랜드는 2급 이하 경영평가 성과급의 등급 간 차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감사원에 제출 및 승인하였으며, 향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의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및 점검 필요

가. 현황

-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출자함
 - 대한석탄공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거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 운영으로 석탄의 수요·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됨

대한석탄공사 일반 현황

(단위: 백만원)

설립일	주요 사업	자본금	주요 주주
1950-11-01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등	87,244	대한민국 정부(100.0%)

자료: 대한석탄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대한석탄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라 완전자본잠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음
 - 최근의 탈 석탄 추세에 따른 감산 및 감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서민연료(연탄) 가격 안정을 위한 원가 이하의 석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와 석탄 채굴여건 악화에 따른 원가상승 등에 따라 매년 매출액이 매출원가에 미달하고 있음
 - 대한석탄공사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총당 및 부채 증가 완화 등을 위해 매년 정부로부터 출자 예산¹⁾을 받고 있으나,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박소희 예산분석관(02-6788-4683)

1)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연도별 정부 출자 예산은 아래와 같음. 2018~2022년의 최근 5년간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에 1,409억원의 예산을 출자의 형태로 지원하였음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66	271	316	285	271	1,409

자료: 대한석탄공사

- 2018년에는 영업손실 652억원, 당기순손실 823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에는 영업손실 916억원, 당기순손실 1,673억원으로 손실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은 2018년 △1조 151억원에서 2022년 △1조 4,258억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됨

대한석탄공사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산총계	805,604	870,444	911,596	970,520	965,924
부채총계	1,820,735	1,981,336	2,105,752	2,262,829	2,391,708
자본총계	△1,015,131	△1,110,892	△1,194,156	△1,292,308	△1,425,784
매출액 (a)	123,978	58,506	40,128	52,013	73,021
매출원가 (b)	173,418	128,609	121,113	132,699	150,430
매출총이익 (a-b)	△49,440	△70,103	△80,985	△80,686	△77,409
영업이익	△65,168	△84,409	△93,173	△104,031	△91,578
당기순이익	△82,345	△122,090	△114,703	△132,517	△167,266

자료: 대한석탄공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통해 대한석탄공사를 재무 위험기관(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5개년간(2022~2026년)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

나. 주요 쟁점

-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 부채의 대부분(98.1%)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사채 및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로, 지속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부담 및 원금 상환은 정부의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확대시키고 있음
- 대한석탄공사는 「대한석탄공사법」²⁾상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기관인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 대한석탄공사의 지속적인 손실 발생은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2)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은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2022년 기준으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부채는 2조 3,470억원으로, 총자산 9,659억원의 2배를 초과(243.0%)하고 있으며, 해당 비율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219.1% → 2022년 243.0%)하고 있고, 총부채 2조 3,917억원의 98.1%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

대한석탄공사 차입금의존도 및 금융부채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B)	증감 (B-A)
총자산 (a)	805,604	870,444	911,596	970,520	965,924	160,320
총부채 (b)	1,820,735	1,981,336	2,105,752	2,262,829	2,391,708	570,973
금융부채 (c)	1,765,225	1,922,482	2,049,467	2,187,029	2,347,029	581,804
차입금의존도 (c/a)	219.1	220.9	224.8	225.3	243.0	23.9
금융부채 비중 (c/b)	97.0	97.0	97.3	96.7	98.1	-

자료: 대한석탄공사 재무제표 및 대한석탄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도별 금융비용이 359억원에서 537억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 연도별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B)	증감 (B-A)
영업이익 (a)	△65,168	△84,409	△93,173	△104,031	△91,578	△26,410
금융비용 (b)	35,923	38,004	32,285	30,049	53,692	17,769
이자보상배율 (a/b)	△1.8	△2.2	△2.9	△3.5	△1.7	-

자료: 대한석탄공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2022.7.)을 통해 마련된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이 필수적임
- 정부와 대한석탄공사는 지속적으로 경영혁신 및 경영정상화 계획, 구조조정 등을 추진 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영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으로, 2022년 7월 마련된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 및 점검 필요

대한석탄공사 추진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내역(1998~2022)

기간	추진내역	내용																								
1998	기획예산처 경영혁신 계획(1998~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경영정상화는 미흡 																								
2001.7.	대한석탄공사 경영정상화 추진(2001~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산업 장기계획(’01~’05년)(2001.7.)’에 의거,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구조조정 추진 (* ’02년 인력감축 351명(△13%), 생산량 감축 133천톤 (△10%)) 																								
2008, 2011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규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2016.6.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능, 구조조정 추진 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7</th> <th>'18</th> <th>'19</th> <th>'20</th> <th>'21</th> <th>'22</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인력감축(명)</td> <td>103</td> <td>373</td> <td>168</td> <td>137</td> <td>126</td> <td>161</td> <td>1,068</td> </tr> <tr> <td>생산량감축(천톤)</td> <td>100</td> <td>258</td> <td>110</td> <td>65</td> <td>77</td> <td>67</td> <td>677</td> </tr> </tbody> </table>	구분	'17	'18	'19	'20	'21	'22	계	인력감축(명)	103	373	168	137	126	161	1,068	생산량감축(천톤)	100	258	110	65	77	67	677
구분	'17	'18	'19	'20	'21	'22	계																			
인력감축(명)	103	373	168	137	126	161	1,068																			
생산량감축(천톤)	100	258	110	65	77	67	677																			
2022.7.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위험기관(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선정하여 향후 5개년간(2022~2026년)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대한석탄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16%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대한석탄공사는 미달성

대한석탄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대한석탄공사	62,263	98	0.16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금융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대한석탄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16%, 2021년 0.05%, 2020년 0.07%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16%로,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되었음³⁾

최근 3년간 대한석탄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69,994	51	0.07
2021	69,374	36	0.05
2022	62,263	98	0.16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한석탄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공공기관 중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구매비율(%)	0.17	0.16	0.12	0.07	0.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 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대한석탄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948	1,472,864	4,996,761	6,469,625
2021	828	647,741	4,387,906	5,035,647
2022	758	1,568,867	3,849,273	5,419,140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대한석탄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이하 성과급의 최고 등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대한석탄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C	13	80	19	70	39	60	19	50	11	40	0	0
		3급 이하	C	12	61	19	60	38	60	20	59	11	58	0	0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C	13	267	19	234	39	200	19	166	11	133	0	0
		3급 이하	C	12	204	19	202	38	200	20	198	11	196	0	0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E	13	40	22	35	32	30	22	25	12	20	0	0
		3급 이하	E	12	30	20	30	36	30	20	29	11	29	0	0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E	13	266	22	233	32	199	22	165	12	132	0	0
		3급 이하	E	12	203	20	201	36	199	20	197	11	195	0	0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C	15	60	21	52	31	45	22	37	12	30	0	0
		3급 이하	C	11	91	21	90	37	89	20	88	11	88	0	0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C	15	265	21	232	31	199	22	165	12	132	0	0
		3급 이하	C	11	203	21	201	37	199	20	197	11	195	0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대한석탄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대한석탄공사는 「단체협약서」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휴가제도를, 「인사 규정」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대한석탄공사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대한석탄공사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가사유	특별휴가	하계휴가 3일 부여 가능	없음	전 직원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대한석탄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사 금융부채에 대한 대지급 및 이행부채 1.9조원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 확대

가. 현황

- 한국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거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79년 3월 3일에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임
 - 한국석유공사의 자본금은 10조 6,997억원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한국석유공사 일반 현황

(단위: 백만원)

설립일	주요 사업	자본금	주주
1979-03-03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사업 등	10,699,765	대한민국 정부

자료: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연결기준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2021년 대비 향상되었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됨
 - 연결기준 재무제표는 한국석유공사는 물론 종속회사들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표시함
 - 연결기준의 매출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석유개발사업 부문의 매출액 증가 등에 기인함. 매출의 확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진 결과,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준으로 자산 18.3조보다 부채가 1.5조원 많은 19.8조원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음

연결기준 한국석유공사 주요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산총계	18,239,001	18,661,802	17,504,036	18,410,741	18,299,095
부채총계	17,474,936	18,130,956	18,644,947	19,962,993	19,795,073
자본총계	764,065	530,846	△1,140,911	△1,552,252	△1,495,979
매출액	3,149,265	2,929,993	1,931,222	2,048,975	3,640,322
영업이익	543,361	571,470	△54,108	379,791	1,777,830
당기순이익	△1,159,541	△154,752	△2,439,173	△45,972	312,951

자료: 한국석유공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캐나다 하베스트사에 대한 투자액 혹은 대지급 예정액 합계액은 총 7.4조원(투자액 6조원, 대지급 예상액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말까지 손상차손 인식액은 6조원 규모임
 -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¹⁾에 투자한 금액은 2009~2022년 동안 출자와 대여를 합하여 총 45.65억달러이며, 2023년 8월 말 기준 매매기준율로 환산할 경우 6조 395억원에 해당하며, 전액 손상차손 혹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임
 - 인수 시점에 25.8억달러를 출자한 이후 2010~2016년 동안 출자 혹은 대여 후 출자전환한 금액이 15억달러이며, 2022년에도 지급보증 중인 하베스트사의 금융부채의 지급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4.85억달러를 대지급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함

1) 하베스트 유전개발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2월에 25.8억\$에 인수한 이후 15.0억\$의 자금이 투입된 주요 유전개발사업 중 하나임

하베스트 출자 및 대여 현황

(단위: UD\$억)

구분	2009	2010~2016	2022	합계
출자	25.8	15.0	0	40.8
대여	0	0	4.85	4.85
합계	25.8	15.0	4.85	45.65

자료: 한국석유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별도 기준의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이후에도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금융부채의 지급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에 별도 재무제표에 기타비유동금융부채로 인식된 1조 3,713억원을 향후 대지급 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인 하베스트가 보유한 유동성 부채(차입금)를 공사가 대지급하기 위해 장기차입을 할 것이므로,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설명임
 - 하지만, 한국석유공사는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하베스트의 부채를 대지급할 예정임에 따라 정부의 우발부채 위험은 증가하게 됨
- 별도기준의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5년 동안 높은 차입금의존도(75.7~95.5%)로 인하여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등 경영 안정성이 낮은 수준임
 - 별도기준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의 차입금의존도²⁾는 2018년에도 75.4%로 낮지 않았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95.5%까지 확대됨. 참고로 차입금의존도는 일반적으로 30% 이하인 경우에 양호하다고 판단함
 - 낮지 않은 차입금의존도는 총자산 중 75.4% 이상에서 금융비용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함

2) 차입금의존도는 금융부채를 총자산(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비용과 이자 등의 부담이 커져 수익성을 낮추고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함

별도기준 한국석유공사 차입금의존도 및 금융비용,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자부부채	10,697,026	10,958,662	11,362,101	12,088,587	13,027,175
총자산	14,127,633	13,915,803	12,929,979	13,764,708	13,643,916
차입금의존도	75.7	78.7	87.9	87.8	95.5
영업이익	△32,788	105,135	56,821	△32,531	166,003
금융비용	326,291	364,545	363,149	324,313	371,789
당기순이익	△830,723	△762,681	△3,171,487	△125,649	△340,029

자료: 한국석유공사 별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하베스트 대지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이자부부채로 조달하거나 조달할 계획 임에 따라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바탕한 사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우발채무 확대
 - 별도기준의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5.7조원이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는 이자부부채가 13조원으로 82.8%를 차지하며, 이 중 94.3%는 사채임

별도기준 2022년 말 한국석유공사 부채 구성

(단위: 억원, %)

금융부채					총부채 (A)
차입금(a)	사채(b)	사채의 금융부채 대비 비중(b/(a+b))	금융부채 합계(c=a+b)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비중(c/A)	
7,386	1222.886	94.3	130,272	82.6	157,641

자료: 한국석유공사 개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3년째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체등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최종적으로 적용받아 공사채(2022년 말 기준 12.3조원)를 발행하고 있음
- 이는 한국석유공사의 세부적인 재무건전성과는 별개로 국가의 암묵적인 보증에 의해 발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석유공사 금융부채로 인한 우발채무 확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Moody's) 신용등급]

	2020			2021			2022		
국가신용등급	Aa2(3)			Aa2(3)			Aa2(3)		
	독자 신용등급	최종 신용등급	차이	독자 신용등급	최종 신용등급	차이	독자 신용등급	최종 신용등급	차이
한국석유공사 신용등급	B1(14)	Aa2(3)	11	B1(14)	Aa2(3)	11	B1(14)	Aa2(3)	11

- 주: 1. 독자신용등급 중 음영처리 한 것은 투기등급임
 2. 괄호 안의 숫자는 Aaa를 1단계로 한 신용등급 단계(notch)로, 낮을수록 신용도가 높음을 뜻함
 3. 상기 등급은 각 연도별 최종 신용평가 등급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분석'

한국석유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12%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는 미달성

한국석유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석유공사	88,590	106	0.12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12%, 2021년 0.12%, 2020년 0.65%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12%로,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되었음³⁾

최근 3년간 한국석유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56,583	370	0.65
2021	115,412	137	0.12
2022	88,590	106	0.12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석유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공공기관 중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구매비율(%)	0.17	0.16	0.12	0.07	0.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석유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 추세

가. 현황

- 한국석유공사의 주요사업[알뜰주유소 및 석유정보(페트로넷 및 오피넷)]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를 보면 2020년 C등급, 2021년 C등급, 2022년 D등급으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배정받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석유공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20	2021	2022
한국석유공사 (등급/점수)	C (82.6점)	C (80.8점)	D (76.7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점수는 82.6점(20년), 80.8점(21년), 76.7점(22년)으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매년 공기업 전체 평균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점수는 76.7점으로, 101개 주요 공공기관²⁾ 중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됨³⁾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0	2021	2022
공기업(평균)	87.3	86.6	86.0
한국석유공사	82.6	80.8	76.7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석유공사의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3년 내내 모든 부분에서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점수 또한 지속적인 하락추세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전반적 고객만족 부분에 대한 점수가 특히 더 저조한 상황
- ‘친절성 향상’, ‘신속·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례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임

최근 3년간 공기업(평균) 및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한국석유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석유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석유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석유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석유 공사
2020	89.4	84.1	86.0	84.4	85.1	80.0	87.1	82.2	85.8	82.1
2021	88.6	82.8	85.5	81.8	84.1	78.4	86.5	80.3	85.0	81.6
2022	88.2	80.0	84.8	77.3	83.5	73.9	85.8	75.3	84.0	77.4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주요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점수	79.1점	76.7점	76.4점	69.5점	68.5점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대부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559명, 융자금액은 694억원임

한국석유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756	705	732	747	644	559
융자금액	95,297,814	89,736,581	92,162,175	93,285,671	73,049,869	69,432,118
1인당 지원 한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대부규정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1년이상 재직 무주택세대주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5년 거치 종료 후 일시상환/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5년 연장 후 일시상환/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0.5~1.5	0.5~1.5	1.5	0.86	1.15	3.7	2.85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석유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85㎡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47	1.15~3.70	5,420,600	미개정	3	450,000	미개정	35	5,095,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석유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744명, 지원금액은 198억 원임

한국석유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401	468	459	529	701	744
지원금액	7,254,494	10,893,412	10,759,908	13,147,900	19,609,600	19,776,500
1인당 지원 한도	근속연수별 1인당 최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2년 이상 10년 이하 재직 중인 직원 최대 3천만원 10년 초과 재직 중인 직원 최대 5천만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2천만원(50개월 분할상환), 2천만원 초과(100개월 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	2.5	2.5	2.5	2.5	2.5	2.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석유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479	2.5	16,780,000	미개정	333	14,26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석유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석유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1명임

한국석유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411	21	2	0	4	0	6	9	1	5	0	0	1	2	13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 신설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임
- 한국석유공사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5회의 징계위원회 중 4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석유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1.30.	성희롱	4	0	4	0.0
2018.6.21.	성폭력	5	0	5	0.0
2020.3.4.	성희롱	5	0	5	0.0
2023.2.10.	성희롱	8	0	8	0.0
2023.6.27.	성희롱	5	2	3	40.0

- 한국석유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	-	-	-	-	2
평균 처분기간	1.5	-	-	-	-	3
보수지급액	12,264	-	-	-	-	12,725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인사규정 제46조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기준임금의 1/2 감액 (기준임금: 기본연봉월액의 85%)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규정, 징계위원회 및 정직자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석유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351	30,299	14,366,215	14,396,514
2021	1,257	8,440,846	14,990,600	23,431,446
2022	1,252	9,018,956	11,813,429	20,832,385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급 이하 내부평가급, 2022년 4급 이하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2023년 3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임

최근 3년간 한국석유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3급 이상	D	10	-	-	-	-	-	-	-	-	-	-	-
		4급 이하			-	-	-	-	-	-	-	-	-	-	
	내부 평가급	3급 이상			267	233	200	167	133	-					
		4급 이하			200	200	200	200	200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3급 이상	C	10	160	140	120	100	80	-					
		4급 이하			128	124	120	116	113	-					
	내부 평가급	3급 이상			267	233	200	167	133	-					
		4급 이하			213	206	200	194	188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3급 이상	B	10	200	175	150	125	100	-					
		4급 등			171	161	150	140	129	-					
		차장급 이하			165	158	150	143	135	-					
	내부 평가급	3급 이상			267	233	200	167	133	-					
		4급 등			229	215	200	186	171	-					
		차장급 이하			220	210	200	190	180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석유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가. 현황

- 공공기관은 계약체결 시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¹⁾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주요 수의계약 사유(관련 규정)

주요 수의계약 사유	관련 규정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등
긴급한 경우 등으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주: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33.0%로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한 상황임

- 101개 주요 공공기관²⁾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18.5%인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3.0%로 주요 공공기관 평균 수의계약 비율의 약 2배에 해당

최근 3년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의계약 비율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계약금액(A)	수의계약 금액(B) ¹⁾	수의계약 비율(B/A)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147,834,329	27,409,626	1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8,208	55,580	33.0

주: 표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으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실시한 '소액수의견적 입찰'이나 '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을 제외한 순수 수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을 주요 사유별로 분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높은 상황

-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82.5%로 전체 수의계약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등'의 소액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지속·반복적으로 체결하였음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수의계약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	수의계약 사유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자회사와의 계약 등	긴급한 경우 등	특정인의 기술 필요 등	중소기업자 제품 구매 등	장애인단체 제품 구매 등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0 (0.0)	510 (0.9)	7,893 (14.2)	0 (0.0)	1,330 (2.4)	45,839 (82.5)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요업체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체결한 주요 수의계약 업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업체명	주요 계약내용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주요 수의계약 사유
에퀴000	· 통역인력 운용계약 · 통역 및 운영지원	30	1,07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주식회사 플랜00	· 각종 간담회 및 행사 대행 용역	27	1,145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주)비비팅 00000	· 각종 행사 통역 · 각종 자료 번역	25	612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주식회사 텐00	· 각종 콘텐츠 및 홍보 영상 제작	18	53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주)렉스00	· 각종 행사 통역 · 각종 자료 번역	32	476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퀴000 업체와 지속·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30건, 10억 7,600만원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플랜00업체와 지속·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27건, 11억 4,500만원

○ 그 밖에도 소액금액 계약에 따른 사유로 (주)이비미팅0000 등 여러 업체와 지속·반복적으로 20~30건, 5억원 내외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발생³⁾)

■ 또한 유사한 목적의 계약은 일괄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를 금액별로 분할하여 '소액금액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국가계약법령을 우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금액별로 분할하여 체결한 수의계약 사례

(단위: 백만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0.08.24.	글로벌 CVC-국내 유망기업 간 투자유치 및 오픈이노베이션 마케팅	19	제타플랜 0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글로벌 CVC-국내 유망기업간 투자유치 및 오픈이노베이션 마케팅 용역	19	이디000	
2020.08.25	글로벌 CVC-국내 유망 기업간 (의료바이오) 투자유치 및 오픈이노베이션 마케팅 용역	19	주식회사 아이00	
2021.04.02	IKP 4,5층 유관기관 사무실 환경개선 (바닥)	45	현진에프 00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IKP 4,5층 유관기관 사무실 환경개선 (도배)	20	한스 인테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21.09.01	2021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 상담 운영	49	위드000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2021.09.24		19	마카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5	그라운드00	

3) 이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인지하고 수의계약총량제한제도를 운영하는 등 동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자발적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임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1.09.17	2021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디지털콘텐츠 제작	38	에듀필000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38	편O	
2022.03.21	2022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지원사업 디지털컨텐츠	38	오콘텐츠 000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38	프리미어 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 규정인 「대여금 규정」 제2장 제16조~제21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44명, 융자금액은 31억원임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	-	21	48	44
융자금액	-	-	-	1,350,950	3,019,514	3,058,119
1인당 지원 한도	-	-	-	100,000	100,000	100,000
관련 내부 규정	「대여금 규정」 제2장(주택자금) 제16조~제21조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구입자금: 근속년수 1년 이상으로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무주택자 임차자금: 근무지역 내 주택이 없고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구입자금: 1년 거치 후 매월 1/200씩 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경과시 잔액 일시 상환 임차자금: 대출일로부터 2년 후 일시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	-	-	-	2.43	2.43-2.55	2.43-2.93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명)	금리(%)	지원액(천원)	규정 개정 여부	인원(명)	지원액(천원)	규정 개정 여부	인원(명)	지원액(천원)	규정 개정 여부
92	2.43~3.42	6,077,633	미개정	21	1,591,650	미개정	32	3,04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내부 규정인 「대여금 규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4명, 지원금액은 10억원 원임

한국광해광업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	-	6	65	34
지원금액	-	-	-	140,000	1,940,000	1,000,000
1인당 지원 한도	-	-	-	30,000	30,000	30,000
관련 내부 규정	「대여금 규정」 제3장(이주지원자금) 제22조~제24조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지방이전일 이전 입사자 중 신청일 현재 본사 재직 중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24.7.31일까지 거치 후 매월 1/200씩 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경과시 잔액 일시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광해광업공단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	-	-	-	2.43	2.43	2.43-2.93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광해광업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99	2.43~3.42	2,940,000	미개정	87	2,705,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	-	-	-
2021	715	4,463,910	6,442,827	10,906,737
2022	730	3,697,496	5,307,960	9,005,456

- 주: 1. 임직원 수는 기준연도말 알리오 공시기준(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따라 작성
 2. 2020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기관통합('21.9.10) 이전에 각 기관별 지급함에 따라 작성제의
 3. 2022년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액은 직원(임원제외)에 대해 지급한 금액기준임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성과급	-	-	-	-	-	-	-	-	-	-	-	-	-		
	내부평가급	-	-	-	-	-	-	-	-	-	-	-	-	-		
2022	경영평가성과급 (광해)	B	10	160	20	137	40	119	20	101	10	77	-	-		
	경영 평가 성과급 (광물)	2급 이상	B	10	158	20	139	40	119	20	99	10	79	-	-	
		3급	B		131		125		119		113		107	-	-	
		4급	B		127		123		119		115		111	-	-	
		5급 이하	B		123		121		119		117		115	-	-	
	내부 평가급 (광해)	2급 이상	-	10	453	20	386	40	335	20	285	10	218	-	-	
		3급 이하	-		135		115		100		85		65	-	-	
	내부 평가급 (광물)	2급 이상	-	10	267	20	233	40	200	20	167	10	133	-	-	
		3급	-		208		204		200		196		192	-	-	
		4급	-		205		203		200		197		195	-	-	
5급 이하		-	203		201		200		199		197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2급 이상	C	10	15	133	50	100	15	83	10	67	-	-		
		3급	C			110		105		100		95	90	-	-	
		4급 이하	C			107		103		100		97	93	-	-	
	내부 평가급	2급 이상	-	10	15	200	50	175	15	150	10	125	100	-	-	
		3급	-			156		153		150		147		144	-	-
		4급 이하	-			154		152		150		148		146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2,223	6,161,908	11,949,522	18,111,430
2021	2,237	5,852,225	12,057,503	17,909,728
2022	2,279	7,182,254	-	7,182,254

- 주: 1. 2022년 경영평가성과급 : 3급 이하 직원 지급액 기재(임원 및 1,2급 직원 하반기 지급 검토)
2. 내부평가급은 매년 12월 지급하는 관계로 금액 미확정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으며, 3급 이하 내부평가급의 경우 등급 구분 없이 모든 인원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받았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평가 성과급의 최고 등급 또는 최저 등급이 10%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최근 3년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2급 이상	B	7	180	19	118	41	107	25	97	7	90	-	-
		3급 이하		6	151	19	129	45	113	21	96	9	75	-	-
	내부평가급	2급 이상	-	10	592	19	279	41	222	19	170	10	136	-	-
		3급 이하		일괄 250% 지급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2급 이상	C	7	160	20	105	41	95	15	86	16	80	-	-
		3급 이하		6	134	26	115	42	100	16	85	10	67	-	-
	내부평가급	2급 이상	-	10	592	20	279	40	222	19	170	10	136	-	-
		3급 이하		일괄 250% 지급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2급 이상	B	하반기 중 지급 검토											
		3급 이하		13	168	21	144	43	125	16	106	7	84	-	-
	내부평가급	-	12월 지급 예정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내부평가급에 대해서도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차등기준을 준용하기 위하여 내부평가급 운영기준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과급 등급별 인원 비율의 경우 부서 소속 직원의 인원 수에 따라 부득이 각 등급별 인원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가. 현황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695	955,238	4,411,041	5,366,279
2021	1,774	1,994,794	4,661,503	6,656,297
2022	1,785	3,649,500	4,869,360	8,518,860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직원 대상 경영평가 성과급 등의 지급액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차등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	상대C 절대D	10	133	20	117	47	100	15	83	8	67	0	0
		직원		일괄 20%의 지급률 적용										0.1	0
	내부 평가급	간부		12	133	23	117	39	100	17	83	10	67	0	0
		직원		10	140	17	120	48	100	16	80	9	61	0.1	0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	상대C 절대C	8	133	24	117	38	100	21	83	8	67	0	0
		직원		일괄 40%의 지급률 적용										0	0
	내부 평가급	간부		9	133	23	117	39	100	21	83	8	67	0	0
		직원		8	148	21	124	43	100	17	76	11	53	0	0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	상대B 절대A	10	133	20	117	43	100	19	83	8	67	1.1	0
		직원		일괄 70%의 지급률 적용										0.2	0
	내부 평가급	간부		10	133	21	117	43	100	17	83	8	67	1.1	0
		직원		10	157	19	128	43	100	18	72	10	43	0.2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여섯째 등급 제외)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11명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10	11	2	-	4	-	2	3	0	3	0	0	0	1	8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5회의 징계위원회 중 2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9.12.6.	성희롱	5	2	3	40.0
2020.1.10.	성희롱	6	3	3	50.0
2020.11.19.	성희롱	5	1	4	20.0
2020.12.17.	성희롱	5	2	3	40.0
2022.12.27.	성희롱	5	1	4	20.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노동조합과 협의 완료(2023.8.23.) 후 이사회에서 9월 중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가. 현황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4명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29	4	1	0	0	0	2	1	2	0	0	0	0	0	2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56명임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237	62	6	0	9	0	14	33	3	0	1	0	1	1	56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용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거래소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대부업무처리지침」 제2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용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매입)17 (임차)14	(매입)10 (임차)32	(매입)13 (임차)43	(매입)17 (임차)18	(매입)16 (임차)19	(매입)1 (임차)2
용자금액	(매입) 1,206,000 (임차) 893,600	(매입) 701,300 (임차) 1,978,461	(매입) 960,000 (임차) 2,971,685	(매입) 1,278,884 (임차) 1,345,302	(매입) 1,010,000 (임차) 1,391,520	(매입) 100,000 (임차) 112,000
1인당 지원 한도	매입: 100,000 / 임차: 8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대부업무처리지침 제12차 개정전문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무주택인 직원 입사 후 실 근무연수 1년 이상인 직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60, 120, 180, 240개월 상환 중 택1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용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2.0~2.5	2.0~2.5	2.0~2.5	2.4~2.46	2.77~2.82	3.19~3.38	4.47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전력거래소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36	2.77~4.47	2,478,520	미개정	26	2,202,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전력거래소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거래소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 따라 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36	21	53	44	31	23
지원금액	645,000	238,000	478,000	479,920	479,930	387,500
1인당 지원 한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업무처리지침 제2차 개정 전문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대부기준일 현재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재직직원 (상근별정직 포함,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이 우선)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1.25	1.50	0.70	0.45	1.20	2.95	5.34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전력거래소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대여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전 지원이 시작된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금리
31	1.20~2.95	479,930	개정	1.20~2.95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전력거래소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2022년 이후)에 대해서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거래소는 사내 노조가 복수로 존재하는 점, 과반수 노조가 부재한 점 등으로 인하여 규정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임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거래소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명임

한국전력거래소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539	16	1	0	2	0	7	6	2	2	0	0	0	2	10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535	270,605	6,341,886	6,612,491
2021	527	783,879	6,523,812	7,307,691
2022	552	1,297,485	6,915,111	8,212,596

- 주: 1. 임직원 수는 지급연도에 성과급을 실제 지급한 인원 기준
2. 2023년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내부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각 직급별 지급률의 중간값을 적용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3~4직급 및 별정직 성과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전력거래소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D	10	51	15	47	50	43	15	38	10	34	-	0	
	내부평가급	D	10	540	15	484	50	428	15	372	10	316	-	0	
2022	경영평가 성과급	C	10	18	15	17	50	15	15	14	10	12	-	0	
	내부평가급	C	10	540	15	484	50	428	15	372	10	316	-	0	
2023	경영평가 성과급	1직급	B	10	98	15	84	50	70	15	56	5	42	5	0
		2직급	B	10	98	15	84	50	70	15	56	10	42	-	0
		3직급	B	10	70	15	70	50	70	15	70	10	70	-	0
		4직급, 별정직	B	10	70	15	70	50	70	15	70	10	70	-	0
	내부평가급	1직급	B	10	659	15	565	50	470	15	376	5	281	5	0
		2직급	B	10	659	15	440	50	470	15	376	10	281	-	0
		3직급	B	10	480	15	425	50	400	15	360	10	320	-	0
		4직급, 별정직	B	10	450	15	425	50	400	15	375	10	350	-	0

- 주: 1. 2021~2022년에 지급된 성과급의 지급률은 직급별 산술평균된 값이며,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급률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2. 2023년 지급되는 성과급의 지급률은 내부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전력거래소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술보증기금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가. 현황

- 공공기관은 계약체결 시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¹⁾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주요 수의계약 사유(관련 규정)

주요 수의계약 사유	관련 규정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등
긴급한 경우 등으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주: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28.8%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상황임

- 101개 주요 공공기관²⁾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18.5%인데, 기술보증기금은 28.8%로 주요 공공기관 평균 수의계약 비율 대비 다소 높은 편임

최근 3년간 기술보증기금 수의계약 비율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계약금액(A)	수의계약 금액(B) ¹⁾	수의계약 비율(B/A)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147,834,329	27,409,626	18.5
기술보증기금	98,589	28,364	28.8

주: 표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으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실시한 '소액수의견적 입찰'이나 '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을 제외한 순수 수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기술보증기금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을 주요 사유별로 분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와 '자회사와의 계약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높은 상황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수의계약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	수의계약 사유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자회사와의 계약 등	긴급한 경우 등	특정인의 기술 필요 등	중소기업자 제품 구매 등	장애인단체 제품 구매 등	
기술보증기금	10,484 (36.9)	0 (0.0)	3,585 (12.6)	0 (0.0)	60 (0.0)	14,235 (50.2)

자료: 기술보증기금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50.2%에 해당
 - 기술보증기금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등’의 소액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음
-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36.9%에 해당

■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요업체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기술보증기금이 체결한 주요 수의계약 업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업체명	주요 계약내용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주요 수의계약 사유
메가넥OO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25	33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계약 체결
해운대OA 사무OO	사무용 가구 구입	24	23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계약 체결
(주)녹색OO	공관 및 합숙소 필요 물품 구입	21	320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COO	홍보 콘텐츠 제작	16	207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계약 체결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술보증기금은 메가넥OO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사이버연수 위탁계약을 매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600~2,0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였음
- 그밖에 사무용 가구나 공관 필요 물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해운대OA사무OO업체 및 녹색OO 업체 등과 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사유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음³⁾

■ 또한 유사한 목적의 계약은 일괄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금액별로 분할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국가계약법령을 우회한 사례가 있었음⁴⁾

3) 기술보증기금은 이와 관련하여 공관 및 합숙소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기술보증기금이 메가넥OO업체와 월별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0.03.23	2020년 제1차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39	메가넥OO	특정인의 기술 필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2020.05.25	2020년 제2차(5月)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22		
2020.08.07	2020년 제3차(7月)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교육비 지급	18		
2020.09.18	2020년 제4차(9月)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교육비 지급	14		
2021.03.02	2021년 제1차(3月)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15		
2021.03.29.	2021년 제2차(4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10		
2021.04.28.	2021년 제3차(5月)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9		
2021.05.26.	2021년 제4차(6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	7		
2021.07.01.	2021년 제5차(7月)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8		
2021.08.03.	2021년 제6차(8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7		
2021.09.02.	2021년 제7차(9月) 직능분야 사이버연수	7		
2021.10.07.	2021년 제8차(10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	6		
2022.03.02	2022년 제1차(3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16		
2022.04.01	2022년 제2차(4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	6		
2022.04.26	2022년 제3차(5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	14		

4) 기술보증기금은 이와 관련하여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계약건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경쟁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하였음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익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익계약 사유
2022.05.19	2022년 제4차(6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8	메가넥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2022.06.29	2022년 제5차(7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12		
2022.09.01	2022년 제7차(9月) 직능 및 외국어분야 사이버연수 위탁계약	7		
2022.09.2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활성화 연수 I	17	베가O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2022.09.2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활성화 연수 II	1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기술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 제13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0명, 융자금액은 15억원임

기술보증기금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1	11	14	18	21	20
융자금액	476,626	639,708	971,248	1,527,929	1,766,804	1,519,234
1인당 지원 한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운영요령」 제4장(주택자금 대여 및 관리)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최대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5년 포함)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기술보증기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기술보증기금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3.05	3.05	2.31	1.8	2.3	2.3	3.0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7월부터 주택융자금 신규 대출을 중단하였으며, 2023년 내 제도개선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노조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기술보증기금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4	2.3~3.0	244,500	미개정	2	20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기술보증기금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기술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408명, 지원금액은 115억 원임

기술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312	306	254	287	315	408
지원금액	6,842,758	7,372,000	6,411,000	7,525,455	8,473,539	11,458,147
1인당 지원 한도	3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6장(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부양가족 있는 직원, 5년 이상 근속한 직원 등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최대 5년(1회 5년 연장 가능) 만기 일시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기술보증기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2년 7월 이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였음

기술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3.5	3.5	3.5	3.5	3.5	3.5	3.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은 연내 제도개선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기술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78	3.5	5,060,000	미개정	163	5,03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기술보증기금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기술보증기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기술보증기금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379	3,574,060	13,083,083	16,657,143
2021	1,457	3,659,815	13,691,579	17,351,394
2022	1,473	3,044,500	13,665,276	16,709,776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전반적으로 다섯째 등급의 인원 비율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최근 3년간 기술보증기금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B	16	83	9	73	55	63	15	52	5	42	1명	0
	내부평가급 (상반기)	-	18	117	7	108	55	100	15	92	5	83	1명	0
	내부평가급 (하반기)	-	15	133	9	117	52	100	17	83	6	67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B	15	83	10	73	54	63	15	52	6	42	1명	0
	내부평가급 (상반기)	-	15	133	10	117	56	100	13	83	6	67	1명	0
	내부평가급 (하반기)	-	14	133	12	117	54	100	14	83	6	67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C	14	67	11	58	56	50	13	42	6	33	6명	0
	내부평가급 (상반기)	-	14	133	10	117	56	100	13	83	6	67	-	-
	내부평가급 (하반기)	-	13	133	12	117	51	100	19	83	5	67	6명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단, 여섯째 등급은 제외)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기술보증기금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 대여 및 관리요령」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7명, 융자금액은 4억 5,500만원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1	11	13	22	21	7
융자금액	770,000	741,890	830,000	1,495,000	1,430,000	455,000
1인당 지원 한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 대여 및 관리요령」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동일세대 부양가족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8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3.0	3.0	3.0	3.0	3.0	3.0	3.0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대여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전 지원이 시작된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금리
28	3.0	1,885,000	개정	3.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해서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51명, 지원금액은 15억 3,500만원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71	33	85	97	100	51
지원금액	2,717,000	1,215,400	2,912,920	3,508,800	2,996,300	1,535,000
1인당 지원 한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1년 이상 재직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년 만기 일시상환(최초 원금의 10% 상환 후 연장 가능, 최대 9회)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2년 7월 이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5.0	5.0	4.0	4.0	4.0	4.0	4.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대여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전 지원이 시작된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금리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전 지원이 시작된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한도
112	4.0	3,435,000	개정	4.0	108	3,875,000	개정	50,00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이전 대역자에 대해서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9명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923	9	0	0	8	0	0	1	0	5	0	0	0	1	6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4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5.16.	성희롱	6	1	5	16.7
2019.7.12.	성희롱	4	2	2	50.0
2021.8.9.	성희롱	4	2	2	50.0
2023.2.20.	성희롱	4	3	1	75.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발간일 2023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2090·1173)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58-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2040-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